

#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3.17.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7.)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 (2022.03.17.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변경고시 : 2019년 1월 29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호, 적용지역 : 부산광역시 일부지역(7개소)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기장군(일광면에 한함)]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우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남·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우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자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국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옥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은행창구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멸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본 사업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해운대역푸르지오더원.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20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거, 향후 2023년 3월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 시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로 단축(소급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단, 향후 정부 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해 해당 보도자료와는 다르게 전매제한기간이 유지 또는 변경될 수 있는 바, 사업주체는 전매제한기간의 단축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장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03월 27일(월)	03월 28일(화)	03월 29일(수)	04월 04일(화)	04월 17일(월) ~ 04월 19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창구</li>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 : www.applyhome.co.kr</li> <li>스마트폰앱</li> </ul> </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 : www.applyhome.co.kr</li> <li>스마트폰앱</li> </ul> </li> </ul>		본 사업 건본주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은행창구 방문접수(10:00~14:00),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01.31 부산광역시 출산장려정책인 「아이.맘부산플랜」에 따라 건축(전문)위원회(2019.12.26.)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총 106세대(다자녀 특별공급 5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53세대)중 다자녀 특별공급 53세대(건설량의 15% 범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35세대(85㎡이하 건설량의 10% 범위)를 아래와 같이 선별(당첨자 발표일[2023.04.04.] 건본주택에서 공개추첨)하고, 공급 금액(옵션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제외)의 5%를 잔금에서 인하여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18.01.31. 부산광역시 출산장려정책인 「아이.맘부산플랜」에 따라 아파트의 25%에 대해 (신혼부부 10% 35세대, 다자녀가구 15% 53세대, 총 88세대) 공급금액(옵션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제외)의 5%를 잔금에서 인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 공급 청약 신청자 중 당첨 세대(정당계약일)에 한하여 공급되며, 이후 예비당첨자 및 무순위, 선착순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이.맘부산플랜」의 분양가 인하 혜택은 해당 세대의 최초 계약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 시에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59A	59B	74	84	합계	
「아이.맘부산플랜」 적용세대	다자녀가구	-	6	6	23	18	53	
	신혼부부	소득기준	우선공급 (75%)	4	4	15	12	35
			일반공급 (25%)	0	0	0	0	0
	합계			10	10	38	30	88

- 기관추천,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아이.맘부산플랜」 대상 세대에서 제외되며, 「아이.맘부산플랜」 적용 세대는 88세대입니다.
  - 위 표와 같이 각 타입별 「아이.맘부산플랜」 세대 배정이 되며, 각 타입별 경쟁이 발생 시에는 당첨자 발표일(2023.04.04.)에 해당 경쟁 유형 추첨 대상자를 대상으로 건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하여 선별합니다.
  - 공개추첨의 시간(상세 일정)은 당첨자 발표일(2023.04.04.)에 유선 및 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추첨 대상자의 착신불가(수신인의 통화거절, 스팸문자등록, 연락처 변경 등) 및 참석불가사유(해외여행, 병·의원 입원 등 일신상의 불참사유 포함)등으로 인하여 미참석 시 재추첨 불참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이.맘부산플랜」 배정 세대 중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접수 미달 시, 각각의 특별공급 미당첨자가 타 유형(다자녀, 신혼부부에 한함.)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재추첨하여 선별합니다.
    - ① 대상 : 「아이.맘부산플랜」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우선공급 대상자 중 경쟁 발생에 따른 1차 공개 추첨 후, 「아이.맘부산플랜」 미적용 대상자, (1차 추첨 탈락자) ③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일반공급 대상 당첨자, (본 사항은 「아이.맘부산플랜」 다자녀 특별공급 15% 미달시에 한함.) ④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하였으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였으나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⑥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였으나, 타 유형(일반, 노부모)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⑦ **추첨일 :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 검수 기간 중 상기 ①번항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재추첨 일정을 개별 통보 후, 건본주택에서 공개추첨하여 선별합니다.** 단, 재추첨 일정은 유선 및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재추첨 대상자의 착신 불가(수신인의 통화거절, 스팸문자 등록, 연락처 변경 등) 및 참석 불가 사유(해외 여행, 병의원 입원 등 일신상의 불참 사유 포함)등으로 인하여 미참석 시, 재추첨 불참에 따른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재추첨 불가 사유 발생에 따른 대리인 참석시, 위임인 - 위임장(재추첨 대리 참석에 대한 업무 위임 업무 자필 기재),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수임인 -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 미비시 재추첨에 참석 불가합니다. ⑧ 재 추첨시, 「아이.맘부산플랜」 할인 적용 세대는 1차 추첨 세대를 포함하여, 총 88세대(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함.)를 초과하여 공급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특별공급 비율 조정 등)에 따라 공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15%로 하향 적용되어 공급됩니다.
  - 「아이.맘부산플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 우선공급(75%)을 우선 공급합니다. (단 우선 공급(75%)이 미달되는 타입은 일반공급(25%)자에게 배정되며, 경쟁 발생시 공개추첨으로 선별합니다.) 또한, 임신 또는 임양부부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임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여야 분양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맘부산플랜」에 선별되는 세대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중 당첨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주체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별하며, 선별되는 세대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되는 동.호수 추첨과는 무관합니다.
- 이하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과 - 7685호(2023.03.1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548번지 외 3필지(우동 595-14, 우동 606-6, 우동 607-3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43층 2개동 총 351세대 중 일반분양 351세대  
 [특별공급 187세대(일반[기관추천] 35세대, 다자녀가구 53세대, 신혼부부 53세대, 노부모부양 11세대, 생애최초 3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차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3000085	01	059.9721A	59A	59.9721	25.5683	85.5404	43.2521	128.7925	9.4204	39	4	6	6	1	4	21	18	1
		02	059.9435B	59B	59.9435	26.0361	85.9796	43.2315	129.2111	9.4159	39	4	6	6	1	4	21	18	1
		03	074.9996	74	74.9996	31.6970	106.6966	54.0898	160.7864	11.7810	156	15	23	23	5	15	81	75	4
		04	084.9322	84	84.9322	34.4181	119.3503	61.2531	180.6034	13.3413	117	12	18	18	4	12	64	53	3
	합 계										351	35	53	53	11	35	187	164	9

-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세대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인허가 변경 또는 필지 합병 및 분할, 확정측량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건축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복합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시설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별 대지지분을 분할하였고, 아파트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 전체 대지지분을 각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산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인·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최하층이라 함은 지상 3층을 말하며 필로티 등으로 지상 3층에 세대가 없는 경우 그 위층인 지상 4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사업계획(변경)승인 기준의 면적을 적용하였습니다.
-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체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 본 건축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복합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시설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별 대지지분을 분할하였고, 아파트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 일반 공급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 견본주택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타입	동/라인	층	공급 세대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회(20%)	2회(20%)	3회(20%)	입주지정일
								23.07.20	23.11.20	24.03.20	
59A	101동 4호	4	1	378,147,580	183,652,420	561,800,000	56,180,000	112,360,000	112,360,000	112,360,000	168,540,000
		5	1	391,609,580	190,190,420	581,800,000	58,180,000	116,360,000	116,360,000	116,360,000	174,540,000
		6	1	401,706,080	195,093,920	596,800,000	59,680,000	119,360,000	119,360,000	119,360,000	179,040,000

		7	1	406,552,400	197,447,600	604,000,000	60,400,000	120,800,000	120,800,000	120,800,000	181,200,000
		8	1	411,264,100	199,735,900	611,000,000	61,100,000	122,200,000	122,200,000	122,200,000	183,300,000
		9	1	415,975,800	202,024,200	618,000,000	61,800,000	123,600,000	123,600,000	123,600,000	185,400,000
		10	1	420,687,500	204,312,500	625,000,000	62,5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187,500,000
		11	1	424,726,100	206,273,900	631,000,000	63,100,000	126,200,000	126,200,000	126,200,000	189,300,000
		12	1	428,764,700	208,235,300	637,000,000	63,700,000	127,400,000	127,400,000	127,400,000	191,100,000
		13	1	432,803,300	210,196,700	643,000,000	64,300,000	128,600,000	128,600,000	128,600,000	192,900,000
		14	1	436,841,900	212,158,100	649,000,000	64,900,000	129,800,000	129,800,000	129,800,000	194,700,000
		15	1	440,880,500	214,119,500	655,000,000	65,500,000	131,000,000	131,000,000	131,000,000	196,500,000
		16	1	443,572,900	215,427,100	659,000,000	65,900,000	131,800,000	131,800,000	131,800,000	197,700,000
		17	1	446,265,300	216,734,700	663,000,000	66,300,000	132,600,000	132,600,000	132,600,000	198,900,000
		18	1	448,957,700	218,042,300	667,000,000	66,700,000	133,400,000	133,400,000	133,400,000	200,100,000
		19	1	451,650,100	219,349,900	671,000,000	67,100,000	134,200,000	134,200,000	134,200,000	201,300,000
		20	1	454,342,500	220,657,500	675,000,000	67,500,000	135,000,000	135,000,000	135,000,000	202,500,000
		22	1	454,342,500	220,657,500	675,000,000	67,500,000	135,000,000	135,000,000	135,000,000	202,500,000
		23	1	457,708,000	222,292,000	680,000,000	68,000,000	136,000,000	136,000,000	136,000,000	204,000,000
		24	1	461,073,500	223,926,500	685,000,000	68,500,000	137,000,000	137,000,000	137,000,000	205,500,000
		25	1	464,439,000	225,561,000	690,000,000	69,000,000	138,000,000	138,000,000	138,000,000	207,000,000
		26	1	467,804,500	227,195,500	695,000,000	69,500,000	139,000,000	139,000,000	139,000,000	208,500,000
		27	1	471,170,000	228,830,000	700,000,000	70,000,000	140,000,000	140,000,000	140,000,000	210,000,000
		28	1	474,535,500	230,464,500	705,000,000	70,500,000	141,000,000	141,000,000	141,000,000	211,500,000
		29	1	477,901,000	232,099,000	710,000,000	71,000,000	142,000,000	142,000,000	142,000,000	213,000,000
		30	1	481,266,500	233,733,500	715,000,000	71,5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214,500,000
		31	1	484,632,000	235,368,000	720,000,000	72,000,000	144,000,000	144,000,000	144,000,000	216,000,000
		32	1	487,997,500	237,002,500	725,000,000	72,5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217,500,000
		33	1	491,363,000	238,637,000	730,000,000	73,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219,000,000
		34	1	494,728,500	240,271,500	735,000,000	73,500,000	147,000,000	147,000,000	147,000,000	220,500,000
		35	1	498,094,000	241,906,000	740,000,000	74,000,000	148,000,000	148,000,000	148,000,000	222,000,000
		36	1	502,132,600	243,867,400	746,000,000	74,600,000	149,200,000	149,200,000	149,200,000	223,800,000
		37	1	506,171,200	245,828,800	752,000,000	75,200,000	150,400,000	150,400,000	150,400,000	225,600,000
		38	1	510,209,800	247,790,200	758,000,000	75,800,000	151,600,000	151,600,000	151,600,000	227,400,000
		39	1	514,248,400	249,751,600	764,000,000	76,400,000	152,800,000	152,800,000	152,800,000	229,200,000
		40	1	518,287,000	251,713,000	770,000,000	77,000,000	154,000,000	154,000,000	154,000,000	231,000,000
		41	1	522,325,600	253,674,400	776,000,000	77,600,000	155,200,000	155,200,000	155,200,000	232,800,000
		42	1	526,364,200	255,635,800	782,000,000	78,200,000	156,400,000	156,400,000	156,400,000	234,600,000
		43	1	530,402,800	257,597,200	788,000,000	78,800,000	157,600,000	157,600,000	157,600,000	236,400,000
59B	101동 5호	4	1	391,744,200	190,255,800	582,000,000	58,200,000	116,400,000	116,400,000	116,400,000	174,600,000
		5	1	411,937,200	200,062,800	612,000,000	61,200,000	122,400,000	122,400,000	122,400,000	183,600,000
		6	1	422,033,700	204,966,300	627,000,000	62,700,000	125,400,000	125,400,000	125,400,000	188,100,000
		7	1	426,745,400	207,254,600	634,000,000	63,400,000	126,800,000	126,800,000	126,800,000	190,200,000
		8	1	431,457,100	209,542,900	641,000,000	64,100,000	128,200,000	128,200,000	128,200,000	192,300,000
		9	1	436,168,800	211,831,200	648,000,000	64,800,000	129,600,000	129,600,000	129,600,000	194,400,000
		10	1	440,880,500	214,119,500	655,000,000	65,500,000	131,000,000	131,000,000	131,000,000	196,500,000
		11	1	444,919,100	216,080,900	661,000,000	66,100,000	132,200,000	132,200,000	132,200,000	198,300,000
		12	1	448,957,700	218,042,300	667,000,000	66,700,000	133,400,000	133,400,000	133,400,000	200,100,000
		13	1	452,996,300	220,003,700	673,000,000	67,300,000	134,600,000	134,600,000	134,600,000	201,900,000
		14	1	457,034,900	221,965,100	679,000,000	67,900,000	135,800,000	135,800,000	135,800,000	203,700,000
		15	1	461,073,500	223,926,500	685,000,000	68,500,000	137,000,000	137,000,000	137,000,000	205,500,000
		16	1	463,765,900	225,234,100	689,000,000	68,900,000	137,800,000	137,800,000	137,800,000	206,700,000
		17	1	466,458,300	226,541,700	693,000,000	69,300,000	138,600,000	138,600,000	138,600,000	207,900,000

		18	1	469,150,700	227,849,300	697,000,000	69,700,000	139,400,000	139,400,000	139,400,000	209,100,000
		19	1	471,843,100	229,156,900	701,000,000	70,100,000	140,200,000	140,200,000	140,200,000	210,300,000
		20	1	474,535,500	230,464,500	705,000,000	70,500,000	141,000,000	141,000,000	141,000,000	211,500,000
		22	1	474,535,500	230,464,500	705,000,000	70,500,000	141,000,000	141,000,000	141,000,000	211,500,000
		23	1	477,901,000	232,099,000	710,000,000	71,000,000	142,000,000	142,000,000	142,000,000	213,000,000
		24	1	481,266,500	233,733,500	715,000,000	71,5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214,500,000
		25	1	484,632,000	235,368,000	720,000,000	72,000,000	144,000,000	144,000,000	144,000,000	216,000,000
		26	1	487,997,500	237,002,500	725,000,000	72,5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217,500,000
		27	1	491,363,000	238,637,000	730,000,000	73,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219,000,000
		28	1	494,728,500	240,271,500	735,000,000	73,500,000	147,000,000	147,000,000	147,000,000	220,500,000
		29	1	498,094,000	241,906,000	740,000,000	74,000,000	148,000,000	148,000,000	148,000,000	222,000,000
		30	1	501,459,500	243,540,500	745,000,000	74,500,000	149,000,000	149,000,000	149,000,000	223,500,000
		31	1	504,825,000	245,175,000	750,000,000	75,000,000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225,000,000
		32	1	508,190,500	246,809,500	755,000,000	75,500,000	151,000,000	151,000,000	151,000,000	226,500,000
		33	1	511,556,000	248,444,000	760,000,000	76,000,000	152,000,000	152,000,000	152,000,000	228,000,000
		34	1	514,921,500	250,078,500	765,000,000	76,500,000	153,000,000	153,000,000	153,000,000	229,500,000
		35	1	518,287,000	251,713,000	770,000,000	77,000,000	154,000,000	154,000,000	154,000,000	231,000,000
		36	1	522,652,500	253,347,500	776,000,000	77,600,000	155,200,000	155,200,000	155,200,000	232,800,000
		37	1	526,018,000	254,982,000	782,000,000	78,200,000	156,400,000	156,400,000	156,400,000	234,600,000
		38	1	530,383,500	256,616,500	788,000,000	78,800,000	157,600,000	157,600,000	157,600,000	236,400,000
		39	1	534,749,000	258,251,000	794,000,000	79,400,000	158,800,000	158,800,000	158,800,000	238,200,000
		40	1	538,114,500	259,885,500	800,000,000	80,000,000	160,000,000	160,000,000	160,000,000	240,000,000
		41	1	542,480,000	261,520,000	806,000,000	80,600,000	161,200,000	161,200,000	161,200,000	241,800,000
		42	1	546,845,500	263,154,500	812,000,000	81,200,000	162,400,000	162,400,000	162,400,000	243,600,000
		43	1	550,211,000	264,789,000	818,000,000	81,800,000	163,600,000	163,600,000	163,600,000	245,400,000
74	101동 2호	4	1	394,100,050	191,399,950	585,500,000	58,550,000	117,100,000	117,100,000	117,100,000	175,650,000
		5	1	414,293,050	201,206,950	615,500,000	61,550,000	123,100,000	123,100,000	123,100,000	184,650,000
		6	1	434,486,050	211,013,950	645,500,000	64,550,000	129,100,000	129,100,000	129,100,000	193,650,000
		7	1	452,659,750	219,840,250	672,500,000	67,25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201,750,000
		8	1	457,371,450	222,128,550	679,500,000	67,950,000	135,900,000	135,900,000	135,900,000	203,850,000
		9	1	462,083,150	224,416,850	686,500,000	68,650,000	137,300,000	137,300,000	137,300,000	205,950,000
		10	1	466,794,850	226,705,150	693,500,000	69,350,000	138,700,000	138,700,000	138,700,000	208,050,000
		11	1	470,833,450	228,666,550	699,500,000	69,950,000	139,900,000	139,900,000	139,900,000	209,850,000
		12	1	474,872,050	230,627,950	705,500,000	70,550,000	141,100,000	141,100,000	141,100,000	211,650,000
		13	1	478,910,650	232,589,350	711,500,000	71,150,000	142,300,000	142,300,000	142,300,000	213,450,000
		14	1	482,949,250	234,550,750	717,500,000	71,750,000	143,500,000	143,500,000	143,500,000	215,250,000
		15	1	486,987,850	236,512,150	723,500,000	72,350,000	144,700,000	144,700,000	144,700,000	217,050,000
		16	1	489,680,250	237,819,750	727,500,000	72,750,000	145,500,000	145,500,000	145,500,000	218,250,000
		17	1	492,372,650	239,127,350	731,500,000	73,150,000	146,300,000	146,300,000	146,300,000	219,450,000
		18	1	495,065,050	240,434,950	735,500,000	73,550,000	147,100,000	147,100,000	147,100,000	220,650,000
		19	1	497,757,450	241,742,550	739,500,000	73,950,000	147,900,000	147,900,000	147,900,000	221,850,000
		20	1	500,449,850	243,050,150	743,500,000	74,350,000	148,700,000	148,700,000	148,700,000	223,050,000
		22	1	500,449,850	243,050,150	743,500,000	74,350,000	148,700,000	148,700,000	148,700,000	223,050,000
		23	1	503,815,350	244,684,650	748,500,000	74,850,000	149,700,000	149,700,000	149,700,000	224,550,000
		24	1	507,180,850	246,319,150	753,500,000	75,350,000	150,700,000	150,700,000	150,700,000	226,050,000
		25	1	510,546,350	247,953,650	758,500,000	75,850,000	151,700,000	151,700,000	151,700,000	227,550,000
		26	1	513,911,850	249,588,150	763,500,000	76,350,000	152,700,000	152,700,000	152,700,000	229,050,000
		27	1	517,277,350	251,222,650	768,500,000	76,850,000	153,700,000	153,700,000	153,700,000	230,550,000
		28	1	520,642,850	252,857,150	773,500,000	77,350,000	154,700,000	154,700,000	154,700,000	232,050,000
		29	1	524,008,350	254,491,650	778,500,000	77,850,000	155,700,000	155,700,000	155,700,000	233,550,000



		30	1	527,373,850	256,126,150	783,500,000	78,350,000	156,700,000	156,700,000	156,700,000	235,050,000
		31	1	530,739,350	257,760,650	788,500,000	78,850,000	157,700,000	157,700,000	157,700,000	236,550,000
		32	1	534,104,850	259,395,150	793,500,000	79,350,000	158,700,000	158,700,000	158,700,000	238,050,000
		33	1	537,470,350	261,029,650	798,500,000	79,850,000	159,700,000	159,700,000	159,700,000	239,550,000
		34	1	540,835,850	262,664,150	803,500,000	80,350,000	160,700,000	160,700,000	160,700,000	241,050,000
		35	1	544,201,350	264,298,650	808,500,000	80,850,000	161,700,000	161,700,000	161,700,000	242,550,000
		36	1	548,239,950	266,260,050	814,500,000	81,450,000	162,900,000	162,900,000	162,900,000	244,350,000
		37	1	552,278,550	268,221,450	820,500,000	82,050,000	164,100,000	164,100,000	164,100,000	246,150,000
		38	1	556,317,150	270,182,850	826,500,000	82,650,000	165,300,000	165,300,000	165,300,000	247,950,000
		39	1	560,355,750	272,144,250	832,500,000	83,250,000	166,500,000	166,500,000	166,500,000	249,750,000
		40	1	564,394,350	274,105,650	838,500,000	83,850,000	167,700,000	167,700,000	167,700,000	251,550,000
		41	1	568,432,950	276,067,050	844,500,000	84,450,000	168,900,000	168,900,000	168,900,000	253,350,000
		42	1	572,471,550	278,028,450	850,500,000	85,050,000	170,100,000	170,100,000	170,100,000	255,150,000
		43	1	576,510,150	279,989,850	856,500,000	85,650,000	171,300,000	171,300,000	171,300,000	256,950,000
	101년 3월	4	1	390,734,550	189,765,450	580,500,000	58,050,000	116,100,000	116,100,000	116,100,000	174,150,000
		5	1	410,927,550	199,572,450	610,500,000	61,050,000	122,100,000	122,100,000	122,100,000	183,150,000
		6	1	421,024,050	204,475,950	625,500,000	62,550,000	125,100,000	125,100,000	125,100,000	187,650,000
		7	1	425,735,750	206,764,250	632,500,000	63,250,000	126,500,000	126,500,000	126,500,000	189,750,000
		8	1	430,447,450	209,052,550	639,500,000	63,950,000	127,900,000	127,900,000	127,900,000	191,850,000
		9	1	435,159,150	211,340,850	646,500,000	64,650,000	129,300,000	129,300,000	129,300,000	193,950,000
		10	1	439,870,850	213,629,150	653,500,000	65,350,000	130,700,000	130,700,000	130,700,000	196,050,000
		11	1	443,909,450	215,590,550	659,500,000	65,950,000	131,900,000	131,900,000	131,900,000	197,850,000
		12	1	447,948,050	217,551,950	665,500,000	66,550,000	133,100,000	133,100,000	133,100,000	199,650,000
		13	1	451,986,650	219,513,350	671,500,000	67,150,000	134,300,000	134,300,000	134,300,000	201,450,000
		14	1	456,025,250	221,474,750	677,500,000	67,750,000	135,500,000	135,500,000	135,500,000	203,250,000
		15	1	460,063,850	223,436,150	683,500,000	68,350,000	136,700,000	136,700,000	136,700,000	205,050,000
		16	1	462,756,250	224,743,750	687,500,000	68,750,000	137,500,000	137,500,000	137,500,000	206,250,000
		17	1	465,448,650	226,051,350	691,500,000	69,150,000	138,300,000	138,300,000	138,300,000	207,450,000
		18	1	468,141,050	227,358,950	695,500,000	69,550,000	139,100,000	139,100,000	139,100,000	208,650,000
		19	1	470,833,450	228,666,550	699,500,000	69,950,000	139,900,000	139,900,000	139,900,000	209,850,000
		20	1	473,525,850	229,974,150	703,500,000	70,350,000	140,700,000	140,700,000	140,700,000	211,050,000
		22	1	473,525,850	229,974,150	703,500,000	70,350,000	140,700,000	140,700,000	140,700,000	211,050,000
		23	1	476,891,350	231,608,650	708,500,000	70,850,000	141,700,000	141,700,000	141,700,000	212,550,000
		24	1	480,256,850	233,243,150	713,500,000	71,350,000	142,700,000	142,700,000	142,700,000	214,050,000
		25	1	483,622,350	234,877,650	718,500,000	71,850,000	143,700,000	143,700,000	143,700,000	215,550,000
		26	1	486,987,850	236,512,150	723,500,000	72,350,000	144,700,000	144,700,000	144,700,000	217,050,000
		27	1	490,353,350	238,146,650	728,500,000	72,850,000	145,700,000	145,700,000	145,700,000	218,550,000
		28	1	493,718,850	239,781,150	733,500,000	73,350,000	146,700,000	146,700,000	146,700,000	220,050,000
		29	1	497,084,350	241,415,650	738,500,000	73,850,000	147,700,000	147,700,000	147,700,000	221,550,000
		30	1	500,449,850	243,050,150	743,500,000	74,350,000	148,700,000	148,700,000	148,700,000	223,050,000
		31	1	503,815,350	244,684,650	748,500,000	74,850,000	149,700,000	149,700,000	149,700,000	224,550,000
		32	1	507,180,850	246,319,150	753,500,000	75,350,000	150,700,000	150,700,000	150,700,000	226,050,000
		33	1	510,546,350	247,953,650	758,500,000	75,850,000	151,700,000	151,700,000	151,700,000	227,550,000
		34	1	513,911,850	249,588,150	763,500,000	76,350,000	152,700,000	152,700,000	152,700,000	229,050,000
		35	1	517,277,350	251,222,650	768,500,000	76,850,000	153,700,000	153,700,000	153,700,000	230,550,000
		36	1	521,315,950	253,184,050	774,500,000	77,450,000	154,900,000	154,900,000	154,900,000	232,350,000
		37	1	525,354,550	255,145,450	780,500,000	78,050,000	156,100,000	156,100,000	156,100,000	234,150,000
		38	1	529,393,150	257,106,850	786,500,000	78,650,000	157,300,000	157,300,000	157,300,000	235,950,000
		39	1	533,431,750	259,068,250	792,500,000	79,250,000	158,500,000	158,500,000	158,500,000	237,750,000
		40	1	537,470,350	261,029,650	798,500,000	79,850,000	159,700,000	159,700,000	159,700,000	239,550,000

		41	1	541,508,950	262,991,050	804,500,000	80,450,000	160,900,000	160,900,000	160,900,000	241,350,000
		42	1	545,547,550	264,952,450	810,500,000	81,050,000	162,100,000	162,100,000	162,100,000	243,150,000
		43	1	549,586,150	266,913,850	816,500,000	81,650,000	163,300,000	163,300,000	163,300,000	244,950,000
	102동 2호	4	1	403,792,690	196,107,310	599,900,000	59,990,000	119,980,000	119,980,000	119,980,000	179,970,000
		5	1	417,658,550	202,841,450	620,500,000	62,050,000	124,100,000	124,100,000	124,100,000	186,150,000
		6	1	427,755,050	207,744,950	635,500,000	63,550,000	127,100,000	127,100,000	127,100,000	190,650,000
		7	1	432,466,750	210,033,250	642,500,000	64,250,000	128,500,000	128,500,000	128,500,000	192,750,000
		8	1	437,178,450	212,321,550	649,500,000	64,950,000	129,900,000	129,900,000	129,900,000	194,850,000
		9	1	441,890,150	214,609,850	656,500,000	65,650,000	131,300,000	131,300,000	131,300,000	196,950,000
		10	1	446,601,850	216,898,150	663,500,000	66,350,000	132,700,000	132,700,000	132,700,000	199,050,000
		11	1	450,640,450	218,859,550	669,500,000	66,950,000	133,900,000	133,900,000	133,900,000	200,850,000
		12	1	454,679,050	220,820,950	675,500,000	67,550,000	135,100,000	135,100,000	135,100,000	202,650,000
		13	1	458,717,650	222,782,350	681,500,000	68,150,000	136,300,000	136,300,000	136,300,000	204,450,000
		14	1	462,756,250	224,743,750	687,500,000	68,750,000	137,500,000	137,500,000	137,500,000	206,250,000
		15	1	466,794,850	226,705,150	693,500,000	69,350,000	138,700,000	138,700,000	138,700,000	208,050,000
		16	1	469,487,250	228,012,750	697,500,000	69,750,000	139,500,000	139,500,000	139,500,000	209,250,000
		17	1	472,179,650	229,320,350	701,500,000	70,150,000	140,300,000	140,300,000	140,300,000	210,450,000
		18	1	474,872,050	230,627,950	705,500,000	70,550,000	141,100,000	141,100,000	141,100,000	211,650,000
		19	1	477,564,450	231,935,550	709,500,000	70,950,000	141,900,000	141,900,000	141,900,000	212,850,000
		20	1	480,256,850	233,243,150	713,500,000	71,350,000	142,700,000	142,700,000	142,700,000	214,050,000
		22	1	480,256,850	233,243,150	713,500,000	71,350,000	142,700,000	142,700,000	142,700,000	214,050,000
		23	1	483,622,350	234,877,650	718,500,000	71,850,000	143,700,000	143,700,000	143,700,000	215,550,000
		24	1	486,987,850	236,512,150	723,500,000	72,350,000	144,700,000	144,700,000	144,700,000	217,050,000
		25	1	490,353,350	238,146,650	728,500,000	72,850,000	145,700,000	145,700,000	145,700,000	218,550,000
		26	1	493,718,850	239,781,150	733,500,000	73,350,000	146,700,000	146,700,000	146,700,000	220,050,000
		27	1	497,084,350	241,415,650	738,500,000	73,850,000	147,700,000	147,700,000	147,700,000	221,550,000
		28	1	500,449,850	243,050,150	743,500,000	74,350,000	148,700,000	148,700,000	148,700,000	223,050,000
		29	1	503,815,350	244,684,650	748,500,000	74,850,000	149,700,000	149,700,000	149,700,000	224,550,000
		30	1	507,180,850	246,319,150	753,500,000	75,350,000	150,700,000	150,700,000	150,700,000	226,050,000
		31	1	510,546,350	247,953,650	758,500,000	75,850,000	151,700,000	151,700,000	151,700,000	227,550,000
		32	1	513,911,850	249,588,150	763,500,000	76,350,000	152,700,000	152,700,000	152,700,000	229,050,000
		33	1	517,277,350	251,222,650	768,500,000	76,850,000	153,700,000	153,700,000	153,700,000	230,550,000
		34	1	520,642,850	252,857,150	773,500,000	77,350,000	154,700,000	154,700,000	154,700,000	232,050,000
		35	1	524,008,350	254,491,650	778,500,000	77,850,000	155,700,000	155,700,000	155,700,000	233,550,000
		36	1	528,046,950	256,453,050	784,500,000	78,450,000	156,900,000	156,900,000	156,900,000	235,350,000
		37	1	532,085,550	258,414,450	790,500,000	79,050,000	158,100,000	158,100,000	158,100,000	237,150,000
	38	1	536,124,150	260,375,850	796,500,000	79,650,000	159,300,000	159,300,000	159,300,000	238,950,000	
	39	1	540,162,750	262,337,250	802,500,000	80,250,000	160,500,000	160,500,000	160,500,000	240,750,000	
	40	1	544,201,350	264,298,650	808,500,000	80,850,000	161,700,000	161,700,000	161,700,000	242,550,000	
	41	1	548,239,950	266,260,050	814,500,000	81,450,000	162,900,000	162,900,000	162,900,000	244,350,000	
	42	1	552,278,550	268,221,450	820,500,000	82,050,000	164,100,000	164,100,000	164,100,000	246,150,000	
	43	1	556,317,150	270,182,850	826,500,000	82,650,000	165,300,000	165,300,000	165,300,000	247,950,000	
	102동 3호	4	1	384,003,550	186,496,450	570,500,000	57,050,000	114,100,000	114,100,000	114,100,000	171,150,000
		5	1	397,465,550	193,034,450	590,500,000	59,050,000	118,100,000	118,100,000	118,100,000	177,150,000
		6	1	407,562,050	197,937,950	605,500,000	60,550,000	121,100,000	121,100,000	121,100,000	181,650,000
		7	1	412,273,750	200,226,250	612,500,000	61,250,000	122,500,000	122,500,000	122,500,000	183,750,000
		8	1	416,985,450	202,514,550	619,500,000	61,950,000	123,900,000	123,900,000	123,900,000	185,850,000
		9	1	421,697,150	204,802,850	626,500,000	62,650,000	125,300,000	125,300,000	125,300,000	187,950,000
		10	1	426,408,850	207,091,150	633,500,000	63,350,000	126,700,000	126,700,000	126,700,000	190,050,000

		11	1	430,447,450	209,052,550	639,500,000	63,950,000	127,900,000	127,900,000	127,900,000	191,850,000
		12	1	434,486,050	211,013,950	645,500,000	64,550,000	129,100,000	129,100,000	129,100,000	193,650,000
		13	1	438,524,650	212,975,350	651,500,000	65,150,000	130,300,000	130,300,000	130,300,000	195,450,000
		14	1	442,563,250	214,936,750	657,500,000	65,750,000	131,500,000	131,500,000	131,500,000	197,250,000
		15	1	446,601,850	216,898,150	663,500,000	66,350,000	132,700,000	132,700,000	132,700,000	199,050,000
		16	1	449,294,250	218,205,750	667,500,000	66,750,000	133,500,000	133,500,000	133,500,000	200,250,000
		17	1	451,986,650	219,513,350	671,500,000	67,150,000	134,300,000	134,300,000	134,300,000	201,450,000
		18	1	454,679,050	220,820,950	675,500,000	67,550,000	135,100,000	135,100,000	135,100,000	202,650,000
		19	1	457,371,450	222,128,550	679,500,000	67,950,000	135,900,000	135,900,000	135,900,000	203,850,000
		20	1	460,063,850	223,436,150	683,500,000	68,350,000	136,700,000	136,700,000	136,700,000	205,050,000
		22	1	460,063,850	223,436,150	683,500,000	68,350,000	136,700,000	136,700,000	136,700,000	205,050,000
		23	1	463,429,350	225,070,650	688,500,000	68,850,000	137,700,000	137,700,000	137,700,000	206,550,000
		24	1	466,794,850	226,705,150	693,500,000	69,350,000	138,700,000	138,700,000	138,700,000	208,050,000
		25	1	483,622,350	234,877,650	718,500,000	71,850,000	143,700,000	143,700,000	143,700,000	215,550,000
		26	1	486,987,850	236,512,150	723,500,000	72,350,000	144,700,000	144,700,000	144,700,000	217,050,000
		27	1	490,353,350	238,146,650	728,500,000	72,850,000	145,700,000	145,700,000	145,700,000	218,550,000
		28	1	493,718,850	239,781,150	733,500,000	73,350,000	146,700,000	146,700,000	146,700,000	220,050,000
		29	1	497,084,350	241,415,650	738,500,000	73,850,000	147,700,000	147,700,000	147,700,000	221,550,000
		30	1	500,449,850	243,050,150	743,500,000	74,350,000	148,700,000	148,700,000	148,700,000	223,050,000
		31	1	503,815,350	244,684,650	748,500,000	74,850,000	149,700,000	149,700,000	149,700,000	224,550,000
		32	1	507,180,850	246,319,150	753,500,000	75,350,000	150,700,000	150,700,000	150,700,000	226,050,000
		33	1	510,546,350	247,953,650	758,500,000	75,850,000	151,700,000	151,700,000	151,700,000	227,550,000
		34	1	513,911,850	249,588,150	763,500,000	76,350,000	152,700,000	152,700,000	152,700,000	229,050,000
		35	1	517,277,350	251,222,650	768,500,000	76,850,000	153,700,000	153,700,000	153,700,000	230,550,000
		36	1	521,315,950	253,184,050	774,500,000	77,450,000	154,900,000	154,900,000	154,900,000	232,350,000
		37	1	525,354,550	255,145,450	780,500,000	78,050,000	156,100,000	156,100,000	156,100,000	234,150,000
		38	1	529,393,150	257,106,850	786,500,000	78,650,000	157,300,000	157,300,000	157,300,000	235,950,000
		39	1	533,431,750	259,068,250	792,500,000	79,250,000	158,500,000	158,500,000	158,500,000	237,750,000
		40	1	537,470,350	261,029,650	798,500,000	79,850,000	159,700,000	159,700,000	159,700,000	239,550,000
		41	1	541,508,950	262,991,050	804,500,000	80,450,000	160,900,000	160,900,000	160,900,000	241,350,000
		42	1	559,009,550	271,490,450	830,500,000	83,050,000	166,100,000	166,100,000	166,100,000	249,150,000
		43	1	589,972,150	286,527,850	876,500,000	87,650,000	175,300,000	175,300,000	175,300,000	262,950,000
84	101동 1호	4	1	450,101,970	218,598,030	668,700,000	66,870,000	133,740,000	133,740,000	133,740,000	200,610,000
		5	1	463,563,970	225,136,030	688,700,000	68,870,000	137,740,000	137,740,000	137,740,000	206,610,000
		6	1	487,122,470	236,577,530	723,700,000	72,370,000	144,740,000	144,740,000	144,740,000	217,110,000
		7	1	512,027,170	248,672,830	760,700,000	76,070,000	152,140,000	152,140,000	152,140,000	228,210,000
		8	1	516,738,870	250,961,130	767,700,000	76,770,000	153,540,000	153,540,000	153,540,000	230,310,000
		9	1	521,450,570	253,249,430	774,700,000	77,470,000	154,940,000	154,940,000	154,940,000	232,410,000
		10	1	526,162,270	255,537,730	781,700,000	78,170,000	156,340,000	156,340,000	156,340,000	234,510,000
		11	1	530,200,870	257,499,130	787,700,000	78,770,000	157,540,000	157,540,000	157,540,000	236,310,000
		12	1	534,239,470	259,460,530	793,700,000	79,370,000	158,740,000	158,740,000	158,740,000	238,110,000
		13	1	538,278,070	261,421,930	799,700,000	79,970,000	159,940,000	159,940,000	159,940,000	239,910,000
		14	1	542,316,670	263,383,330	805,700,000	80,570,000	161,140,000	161,140,000	161,140,000	241,710,000
		15	1	546,355,270	265,344,730	811,700,000	81,170,000	162,340,000	162,340,000	162,340,000	243,510,000
		16	1	549,047,670	266,652,330	815,700,000	81,570,000	163,140,000	163,140,000	163,140,000	244,710,000
		17	1	551,740,070	267,959,930	819,700,000	81,970,000	163,940,000	163,940,000	163,940,000	245,910,000
		18	1	554,432,470	269,267,530	823,700,000	82,370,000	164,740,000	164,740,000	164,740,000	247,110,000
		19	1	557,124,870	270,575,130	827,700,000	82,770,000	165,540,000	165,540,000	165,540,000	248,310,000
		20	1	559,817,270	271,882,730	831,700,000	83,170,000	166,340,000	166,340,000	166,340,000	249,510,000
		22	1	559,817,270	271,882,730	831,700,000	83,170,000	166,340,000	166,340,000	166,340,000	249,510,000

		23	1	563,182,770	273,517,230	836,700,000	83,670,000	167,340,000	167,340,000	167,340,000	251,010,000
		24	1	566,548,270	275,151,730	841,700,000	84,170,000	168,340,000	168,340,000	168,340,000	252,510,000
		25	1	569,913,770	276,786,230	846,700,000	84,670,000	169,340,000	169,340,000	169,340,000	254,010,000
		26	1	573,279,270	278,420,730	851,700,000	85,170,000	170,340,000	170,340,000	170,340,000	255,510,000
		27	1	576,644,770	280,055,230	856,700,000	85,670,000	171,340,000	171,340,000	171,340,000	257,010,000
		28	1	580,010,270	281,689,730	861,700,000	86,170,000	172,340,000	172,340,000	172,340,000	258,510,000
		29	1	583,375,770	283,324,230	866,700,000	86,670,000	173,340,000	173,340,000	173,340,000	260,010,000
		30	1	586,741,270	284,958,730	871,700,000	87,170,000	174,340,000	174,340,000	174,340,000	261,510,000
		31	1	590,106,770	286,593,230	876,700,000	87,670,000	175,340,000	175,340,000	175,340,000	263,010,000
		32	1	593,472,270	288,227,730	881,700,000	88,170,000	176,340,000	176,340,000	176,340,000	264,510,000
		33	1	596,837,770	289,862,230	886,700,000	88,670,000	177,340,000	177,340,000	177,340,000	266,010,000
		34	1	600,203,270	291,496,730	891,700,000	89,170,000	178,340,000	178,340,000	178,340,000	267,510,000
		35	1	603,568,770	293,131,230	896,700,000	89,670,000	179,340,000	179,340,000	179,340,000	269,010,000
		36	1	607,607,370	295,092,630	902,700,000	90,270,000	180,540,000	180,540,000	180,540,000	270,810,000
		37	1	611,645,970	297,054,030	908,700,000	90,870,000	181,740,000	181,740,000	181,740,000	272,610,000
		38	1	615,684,570	299,015,430	914,700,000	91,470,000	182,940,000	182,940,000	182,940,000	274,410,000
		39	1	619,723,170	300,976,830	920,700,000	92,070,000	184,140,000	184,140,000	184,140,000	276,210,000
		40	1	623,761,770	302,938,230	926,700,000	92,670,000	185,340,000	185,340,000	185,340,000	278,010,000
		41	1	627,800,370	304,899,630	932,700,000	93,270,000	186,540,000	186,540,000	186,540,000	279,810,000
		42	1	631,838,970	306,861,030	938,700,000	93,870,000	187,740,000	187,740,000	187,740,000	281,610,000
		43	1	635,877,570	308,822,430	944,700,000	94,470,000	188,940,000	188,940,000	188,940,000	283,410,000
	102동 1호	4	1	450,101,970	218,598,030	668,700,000	66,870,000	133,740,000	133,740,000	133,740,000	200,610,000
		5	1	463,563,970	225,136,030	688,700,000	68,870,000	137,740,000	137,740,000	137,740,000	206,610,000
		6	1	477,025,970	231,674,030	708,700,000	70,870,000	141,740,000	141,740,000	141,740,000	212,610,000
		7	1	481,737,670	233,962,330	715,700,000	71,570,000	143,140,000	143,140,000	143,140,000	214,710,000
		8	1	486,449,370	236,250,630	722,700,000	72,270,000	144,540,000	144,540,000	144,540,000	216,810,000
		9	1	491,161,070	238,538,930	729,700,000	72,970,000	145,940,000	145,940,000	145,940,000	218,910,000
		10	1	495,872,770	240,827,230	736,700,000	73,670,000	147,340,000	147,340,000	147,340,000	221,010,000
		11	1	499,911,370	242,788,630	742,700,000	74,270,000	148,540,000	148,540,000	148,540,000	222,810,000
		12	1	503,949,970	244,750,030	748,700,000	74,870,000	149,740,000	149,740,000	149,740,000	224,610,000
		13	1	507,988,570	246,711,430	754,700,000	75,470,000	150,940,000	150,940,000	150,940,000	226,410,000
		14	1	512,027,170	248,672,830	760,700,000	76,070,000	152,140,000	152,140,000	152,140,000	228,210,000
		15	1	516,065,770	250,634,230	766,700,000	76,670,000	153,340,000	153,340,000	153,340,000	230,010,000
		16	1	518,758,170	251,941,830	770,700,000	77,070,000	154,140,000	154,140,000	154,140,000	231,210,000
		17	1	521,450,570	253,249,430	774,700,000	77,470,000	154,940,000	154,940,000	154,940,000	232,410,000
		18	1	524,142,970	254,557,030	778,700,000	77,870,000	155,740,000	155,740,000	155,740,000	233,610,000
		19	1	526,835,370	255,864,630	782,700,000	78,270,000	156,540,000	156,540,000	156,540,000	234,810,000
		20	1	529,527,770	257,172,230	786,700,000	78,670,000	157,340,000	157,340,000	157,340,000	236,010,000
		22	1	529,527,770	257,172,230	786,700,000	78,670,000	157,340,000	157,340,000	157,340,000	236,010,000
		23	1	532,893,270	258,806,730	791,700,000	79,170,000	158,340,000	158,340,000	158,340,000	237,510,000
		24	1	536,258,770	260,441,230	796,700,000	79,670,000	159,340,000	159,340,000	159,340,000	239,010,000
		25	1	539,624,270	262,075,730	801,700,000	80,170,000	160,340,000	160,340,000	160,340,000	240,510,000
		26	1	542,989,770	263,710,230	806,700,000	80,670,000	161,340,000	161,340,000	161,340,000	242,010,000
		27	1	546,355,270	265,344,730	811,700,000	81,170,000	162,340,000	162,340,000	162,340,000	243,510,000
		28	1	549,720,770	266,979,230	816,700,000	81,670,000	163,340,000	163,340,000	163,340,000	245,010,000
		29	1	553,086,270	268,613,730	821,700,000	82,170,000	164,340,000	164,340,000	164,340,000	246,510,000
		30	1	556,451,770	270,248,230	826,700,000	82,670,000	165,340,000	165,340,000	165,340,000	248,010,000
		31	1	559,817,270	271,882,730	831,700,000	83,170,000	166,340,000	166,340,000	166,340,000	249,510,000
		32	1	563,182,770	273,517,230	836,700,000	83,670,000	167,340,000	167,340,000	167,340,000	251,010,000

		33	1	566,548,270	275,151,730	841,700,000	84,170,000	168,340,000	168,340,000	168,340,000	252,510,000
		34	1	569,913,770	276,786,230	846,700,000	84,670,000	169,340,000	169,340,000	169,340,000	254,010,000
		35	1	573,279,270	278,420,730	851,700,000	85,170,000	170,340,000	170,340,000	170,340,000	255,510,000
		36	1	577,317,870	280,382,130	857,700,000	85,770,000	171,540,000	171,540,000	171,540,000	257,310,000
		37	1	581,356,470	282,343,530	863,700,000	86,370,000	172,740,000	172,740,000	172,740,000	259,110,000
		38	1	585,395,070	284,304,930	869,700,000	86,970,000	173,940,000	173,940,000	173,940,000	260,910,000
		39	1	589,433,670	286,266,330	875,700,000	87,570,000	175,140,000	175,140,000	175,140,000	262,710,000
		40	1	593,472,270	288,227,730	881,700,000	88,170,000	176,340,000	176,340,000	176,340,000	264,510,000
		41	1	597,510,870	290,189,130	887,700,000	88,770,000	177,540,000	177,540,000	177,540,000	266,310,000
		42	1	601,549,470	292,150,530	893,700,000	89,370,000	178,740,000	178,740,000	178,740,000	268,110,000
		43	1	605,588,070	294,111,930	899,700,000	89,970,000	179,940,000	179,940,000	179,940,000	269,910,000
		4	1	450,101,970	218,598,030	668,700,000	66,870,000	133,740,000	133,740,000	133,740,000	200,610,000
		5	1	463,563,970	225,136,030	688,700,000	68,870,000	137,740,000	137,740,000	137,740,000	206,610,000
		6	1	477,025,970	231,674,030	708,700,000	70,870,000	141,740,000	141,740,000	141,740,000	212,610,000
		7	1	481,737,670	233,962,330	715,700,000	71,570,000	143,140,000	143,140,000	143,140,000	214,710,000
		8	1	486,449,370	236,250,630	722,700,000	72,270,000	144,540,000	144,540,000	144,540,000	216,810,000
		9	1	491,161,070	238,538,930	729,700,000	72,970,000	145,940,000	145,940,000	145,940,000	218,910,000
		10	1	495,872,770	240,827,230	736,700,000	73,670,000	147,340,000	147,340,000	147,340,000	221,010,000
		11	1	499,911,370	242,788,630	742,700,000	74,270,000	148,540,000	148,540,000	148,540,000	222,810,000
		12	1	503,949,970	244,750,030	748,700,000	74,870,000	149,740,000	149,740,000	149,740,000	224,610,000
		13	1	507,988,570	246,711,430	754,700,000	75,470,000	150,940,000	150,940,000	150,940,000	226,410,000
		14	1	512,027,170	248,672,830	760,700,000	76,070,000	152,140,000	152,140,000	152,140,000	228,210,000
		15	1	516,065,770	250,634,230	766,700,000	76,670,000	153,340,000	153,340,000	153,340,000	230,010,000
		16	1	518,758,170	251,941,830	770,700,000	77,070,000	154,140,000	154,140,000	154,140,000	231,210,000
		17	1	521,450,570	253,249,430	774,700,000	77,470,000	154,940,000	154,940,000	154,940,000	232,410,000
		18	1	524,142,970	254,557,030	778,700,000	77,870,000	155,740,000	155,740,000	155,740,000	233,610,000
		19	1	526,835,370	255,864,630	782,700,000	78,270,000	156,540,000	156,540,000	156,540,000	234,810,000
		20	1	529,527,770	257,172,230	786,700,000	78,670,000	157,340,000	157,340,000	157,340,000	236,010,000
		22	1	529,527,770	257,172,230	786,700,000	78,670,000	157,340,000	157,340,000	157,340,000	236,010,000
		23	1	532,893,270	258,806,730	791,700,000	79,170,000	158,340,000	158,340,000	158,340,000	237,510,000
		24	1	536,258,770	260,441,230	796,700,000	79,670,000	159,340,000	159,340,000	159,340,000	239,010,000
		25	1	539,624,270	262,075,730	801,700,000	80,170,000	160,340,000	160,340,000	160,340,000	240,510,000
		26	1	542,989,770	263,710,230	806,700,000	80,670,000	161,340,000	161,340,000	161,340,000	242,010,000
		27	1	546,355,270	265,344,730	811,700,000	81,170,000	162,340,000	162,340,000	162,340,000	243,510,000
		28	1	549,720,770	266,979,230	816,700,000	81,670,000	163,340,000	163,340,000	163,340,000	245,010,000
		29	1	553,086,270	268,613,730	821,700,000	82,170,000	164,340,000	164,340,000	164,340,000	246,510,000
		30	1	556,451,770	270,248,230	826,700,000	82,670,000	165,340,000	165,340,000	165,340,000	248,010,000
		31	1	559,817,270	271,882,730	831,700,000	83,170,000	166,340,000	166,340,000	166,340,000	249,510,000
		32	1	563,182,770	273,517,230	836,700,000	83,670,000	167,340,000	167,340,000	167,340,000	251,010,000
		33	1	566,548,270	275,151,730	841,700,000	84,170,000	168,340,000	168,340,000	168,340,000	252,510,000
		34	1	569,913,770	276,786,230	846,700,000	84,670,000	169,340,000	169,340,000	169,340,000	254,010,000
		35	1	573,279,270	278,420,730	851,700,000	85,170,000	170,340,000	170,340,000	170,340,000	255,510,000
		36	1	577,317,870	280,382,130	857,700,000	85,770,000	171,540,000	171,540,000	171,540,000	257,310,000
		37	1	581,356,470	282,343,530	863,700,000	86,370,000	172,740,000	172,740,000	172,740,000	259,110,000
		38	1	585,395,070	284,304,930	869,700,000	86,970,000	173,940,000	173,940,000	173,940,000	260,910,000
		39	1	589,433,670	286,266,330	875,700,000	87,570,000	175,140,000	175,140,000	175,140,000	262,710,000
		40	1	593,472,270	288,227,730	881,700,000	88,170,000	176,340,000	176,340,000	176,340,000	264,510,000
		41	1	597,510,870	290,189,130	887,700,000	88,770,000	177,540,000	177,540,000	177,540,000	266,310,000
		42	1	615,011,470	298,688,530	913,700,000	91,370,000	182,740,000	182,740,000	182,740,000	274,110,000
		43	1	645,974,070	313,725,930	959,700,000	95,970,000	191,940,000	191,940,000	191,940,000	287,910,000

102동 4호

※ 상기 각 회차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익일 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함

■ 주택형의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59.9721A	059.9435B	074.9996	084.9322
약식표기	59A	59B	74	84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형 내 타입은 동호수 배정과 함께 무작위로 추첨하기 때문에 선택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기 바람.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상기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신탁등기 말소비용, 금지사항 말소비용 등 포함), 취득세(등록세 포함), 인지세가 미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함.
- 오피스텔 및 그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등 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며, 유상선택품목 금액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각 주택형별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 상가 대지지분을 제외한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증강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
- 건본주택에는 74㎡, 84㎡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외 주택형은 건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카탈로그 등)에 표기된 평형별 평면 등의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공급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함.
- 계약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조건(중도금 무이자)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용 축소,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음.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을 원할시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대출미신청자 또는 계약자 개인사유에 의한 대출 불가 또는 한도제한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분양대금 전액을 조달하여 정상 납부하여야 하며 본건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대신하는 계약조건 등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자는 계약금 완납 시 지정된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같음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 가능함.
- 본건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①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과 아파트 소유자가 용도에 따른 지분별 공동소유(공유)하는 시설('공유형 주민공동시설') ② 아파트 소유자들이 단독 소유(아파트 소유자들간

공유)하는 시설(이하 '아파트 전용 주민공동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주민공동시설의 종류 및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아래 「IX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항목 내 「■ 주민공동시설」로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9A	59B	74	84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2	5	4	1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2	2	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2	2	5
	중소기업 근로자	-	1	2	2	5
	장애인	부산광역시	1	-	2	1
울산광역시		-	-	1	1	2
경상남도		-	-	1	-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	6	23	18	53
신혼부부 특별공급		6	6	23	18	5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5	4	11
생애최초 특별공급		4	4	15	12	35
합 계		24	24	78	61	187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II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li> </ul> </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data-bbox="286 1141 2128 1324">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3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2018.01.31. 부산광역시 출산장려정책인 「아이.맘부산플랜」에 따라 건축(전문)위원회(2019.12.26.) 심의결과를 반영, 공급세대수의 15% 이내) : 5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조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사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및 2018.01.31. 부산광역시 출산장려정책인 「아이.맘부산플랜」에 따라 건축(전문)위원회(2019.12.26.) 심의결과를 반영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5% 범위) : 5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3.03.17	전전년도 소득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7,811,342원	7,622,057원~9,146,467원	8,040,493원~9,648,590원	8,701,640원~10,441,967원	9,362,787원~11,235,343원	10,023,934원~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9,113,233원	7,622,057원~10,670,878원	8,040,493원~11,256,689원	8,701,640원~12,182,295원	9,362,787원~13,107,900원	10,023,934원~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10,415,123원	9,146,468원~12,195,290원	9,648,591원~12,864,787원	10,441,968원~13,922,622원	11,235,344원~14,980,458원	12,028,721원~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li> <li>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고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1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3.03.17	전전년도 소득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10,415,123원	9,908,674원~12,195,290원	10,452,641원~12,864,787원	11,312,132원~13,922,622원	12,171,623원~14,980,458원	13,031,114원~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인 가구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3억3,100만원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물+토지)	이하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지속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태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인영 주택	1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면적 85㎡ 이하 : 가정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정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정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 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만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분양)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같음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09.0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 시 적용함.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3.03.27(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은행창구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li> <li>• 은행창구</li> </ul>
일반공급	1순위	2023.03.28(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2순위	2023.03.29(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창구 방문접수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국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b>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b>(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 가정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b></li> <li>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li> </ul> </li> <li>3) <b>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b>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li> </ol>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b> 세대원으로 한다.</li> <li>2) 주택공급신청자의 <b>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b>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세대주인 경우로서</b>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b>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b>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계존속</li>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li> <li>※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li> </ul> </li> <li>3) 자녀(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자녀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li> </ul> </li> <li>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b>외국인인 직계비속</b>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li> </ol>
③입주자지속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지속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지속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정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정항목	가정상한	가정구분	점수	가정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li> <li>※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 <li>(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ul> </li> <li>*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o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점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창구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은행창구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은행창구에서만 가능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우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b>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b>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b>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b>(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ul>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 제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23.04.04.(화)</li> <li>•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3.04.06.(목)~2023.04.15.(토) (10:00 ~ 16:00)</li> <li>• 장소 : 본 사업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3.04.17.(월)~2023.04.19.(수) (10:00~16:00)</li> <li>• 장소 : 본 사업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화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화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본 사업 홈페이지(<http://해운대역푸르지오더원.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04.04.(화) ~ 2023.04.13.(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04.04.(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일정

서류 제출 및 심사 기한	• 2023.04.06.(목) ~ 2023.04.15.(토) 10:00~16:00까지
대상자	• 특별공급, 일반공급(1,2순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 장소	• 본 사업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유의사항

※ 자격확인 구비서류는 상기 특별공급(일반공급 포함) 구비서류 참고하시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2023.04.06.~2023.04.15.)에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 하여 통보해야 함.
-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특별공급신청서/확약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 건분주택 비치 - 인터넷 청약(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특별공급신청자)무주택서약서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인터넷 청약, 청약홈(apply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 본 사업 건분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본인발급용 필수)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7.) 현재 1년 이상 부산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국내거주기간 확인.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종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기록대조일 : 출생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7.)로 지정하여 발급
		○	단신부임 입증서류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7.)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상세”로 발급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청약자 단신부임 제외사항]: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 체류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7.)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7.)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b>[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b>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7.)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7.)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록대조일 : 출생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7.)로 지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해당기관 추천서 (기관 추천 명단 확인으로 대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배정기준표	본인	·본 사업 견본주택 비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한부모가족증명서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본에 등재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직계비속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입양인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임신중인 경우/ 견본주택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기록대조일 : 출생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7.)로 지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비속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록대조일 : 출생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7.)로 지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7.)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직계비속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가 확인 되는 않는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7.)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자녀가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임신중인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분리세대 배우자 직계존속)	·당첨자의 직계존속이(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본 사업 견본주택 비치 /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출생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7.)로 지정하여 발급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발급처: 해당직장 및 세우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발급처:세우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있는자 포함) ※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 모집광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광고일(2023.03.17.)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 )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건본주택에 비치)
	일반공급 (가정제)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본인발급용 필수)
	○	인감도장		·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생략
	○	신분증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족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소형, 자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우호 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7.)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 상기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본 1통 필요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산정방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전년도 감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하고 재직증명서상 육아휴직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① 해당직장 ② 세우서, 해당직장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③ 해당직장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 인 자의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③ 해당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전년도 전직자	①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신규취업자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② 계속적인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위촉증명서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①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매입,매출 기재된 부분) ※ 모집공고일 이후 가입분 불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기부등본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① 세무서 ② 세무서,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1) 전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 전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2) 전전년도 또는 금년도 모집공고일 이전 소득은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 전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	① 견본주택 비치 1) 세무서 2) 세무서, 해당직장
기타(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안내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영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①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b>소득세납부 입증서류</b>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①근로자 및 자영업자 ③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 또는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이 환급확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추가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원)	① 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 세무서
--	-----------------------	--	---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6호(2023.2.28.)],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7호(2023.2.28.)]에 따릅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된 상세로 발급 요망 부탁드립니다,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 취급 및 사업자의 직인 날인이 필수입니다.

## Ⅶ 계약체결

###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3.04.17.(월)~2023.04.19.(수) 3일간(10:00~16:00)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본 사업 건본주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 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후 경쟁 미달시에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계좌 이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아래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 상기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경우 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당첨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건본주택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 사항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사전서류 미접수시 필수서류 구비)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자격 검증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 완료시 제외)
	○		인감증명서	-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에 한함. ※ <b>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b>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계약금 입금증	- 건본주택에서는 수납불가,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	추가 개별통지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전자수입인지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	자금조달계획서	- 견본주택 비치
부적격 당첨 통보자		○	무주택 소명서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사항	○		인감증명서(계약자)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청약자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인감도장(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위임장(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신분증 및 인장(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3.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7.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만 인정합니다.(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아파트 계약용으로 사용 불가)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공급대금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납부계좌(계약금)	신한은행	140-013-130489	한국자산신탁
분양대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무통장 입금시 등·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201홍길동)

• 예금주 한국자산신탁(주)은 관리형태지신탁에 의한 수탁자로서 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인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당첨자로 전산관리됨) 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8항에 의거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 할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청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청자 중 부적격 당청 사유가 고의성 없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청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당청이 제한됨.

- ① 1순위 당청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성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청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청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청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청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청자를 판명함.

• 부적격 당청자를 당청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청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청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청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청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당청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당청자)로 선정된 주택의 당청자 지위가 우선시 되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무효화 된 것으로 봄.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청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청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청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청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청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청자로 전산 관리함.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서 확인하는 인허가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동산 전매 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전매계약 시 양수인과 양도인은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 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잔금납부일) 이후 과세기준일이 도래(또는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함.

##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60%는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는 무이자로 진행됩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수도 있으므로,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대출 불가사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10%) 완납하고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세 등 제반되는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 대출은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 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대출 보증(12억원이하 주택만 해당)은 비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2건(1인 5억원 한도)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중도금 대출 협약에 따라 중도금 1~3차(60%)에 해당하는 대출금액에 대하여 해당대출의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 지정기간(입주지정

- 시간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를 포함)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중도금대출 이자는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 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함.
  -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지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결정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종단 등 요구에 따라 중도금 2회 이상 미납시, 미납된 중도금의 납부를 2회 이상 최고한 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는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금융기관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음
-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 전대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3] 규정에 의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전대행위 제한 기간(소유권이전등기일,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대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까지 제한됩니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 포함) 단, 상속은 제외합니다.
  - 분양권 전대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입니다. (전대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대 전까지 채무 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대가 가능합니다.
  - 전대기간 작성(합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대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 입주예정일 : 2024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 추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턴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IX 추가선택품목 안내

### ■ 가전 유상옵션 -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VAT포함)

	주력형	제조사 및 모델명	판매가격	비고
비스포크 냉장고 / 변온(냉동)고	59A, 59B, 74, 84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RR40A7895AP]/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변온 [RZ24A59G0AP]	3,500,000원	※ 도어 재질 및 색상 : 새틴글래스/글램글래스/코타메탈 택 1 ※ 비스포크 페어 키트 포함
비스포크 김치냉장고 / 변온(김치)고	59A, 59B, 74, 84	삼성 비스포크 1도어 김치 [RQ34A7845AP]/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변온 [RZ24A59G0AP]	3,800,000원	※ 도어 재질 및 색상 : 새틴글래스/글램글래스/코타메탈 택 1 ※ 비스포크 페어 키트 포함

※ 비스포크 냉장, 변온(냉동)고/김치냉장고, 변온(김치)고 옵션 미선택 시 일반 냉장고 설치를 위한 공간이 제공되며, 일반 냉장고 설치시 가구장보다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비스포크의 도어 패널의 재질 및 색상은 입주 전 옵션 설치 대리점(삼성전자)을 통해 추후 개별 선택(글램글래스/새틴글래스/코타메탈 재질)하실 수 있습니다.

※ 비스포크의 도어 패널의 색상을 개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설치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및 E-모델하우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 유상옵션의 납품 시점에 운영하는 도어 패널 색상(글램글래스, 새틴글래스, 코타메탈 재질)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며, 운영여부에 따라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스포크 냉장, 변온(냉동)고 / 김치냉장고, 변온(김치)고의 설치 순서 및 설치 위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변온고는 냉장, 냉동, 김치로 변온 가능합니다.

## ■ 유상 선택품목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비고
가전 유상옵션 납부계좌	추후 안내예정	추후 안내예정	(주)대우건설	※ 무통장 입금시 의뢰인란에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의 성명 기재 요망 (예시 : 201동 1001호 홍길동의 경우 → 2011001홍길동)

## ■ 유의사항

- 상기 추가선택품목(유·무상 옵션)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시공사 (주)대우건설이 주관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제품상세내역, 납부금액 및 시기는 추후 별도로 계약자에게 공지 후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유상옵션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유상옵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입주 시 개별납부)
- 유상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선택품목 잔금은 계약 체결 시 실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201동 1403호 홍길동 : 2011403홍길동 / 202동 201호 홍길순 : 2020201홍길순)
- 잔금은 공급계약 체결 시 실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지정된 납부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약금의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실별 유상선택품목의 잔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실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유상선택품목 납부 대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유상선택품목의 대금 납부계좌 및 실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시공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유상선택품목의 계약금 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는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선택품목은 시공상의 관리문제(발주 및 설치)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유상선택품목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며, 이는 시공사에 귀속됩니다. (상세내용은 유상선택품목 계약서에 명기하고 계약 체결하오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라 인접하는 가구, 마감재, 벽체, 몰딩, 걸레받이, 커튼박스, 등기구, 스위치 및 콘센트, 천장형 에어컨 및 점검구 등의 위치와 형태가 견본주택 및 홍보물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의 형태, 사이즈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구성 및 설치위치, 형태 등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지점에 이르러 생산단종(제품의 품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개선 등의 사유) 후 신모델 출시 시 동제조사와 동급, 동가로 변경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 시 동급, 동가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유상 옵션)의 판매가격은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분에 해당하는 비용과 옵션 품목 설치시 증가비용을 가감 정산하여 반영한 금액으로 세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본 사업 견본주택에 일부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상세내용 중 공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 시 별도의 안내 후 계약 진행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추가선택품목 계약도 함께 해제됩니다.(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 해제 사유에 따라 위약금 및 원상복구 비용 발생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상품구성 및 디자인, 제품모델,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b>X</b>	<b>단지여건 및 유의사항</b>
----------	--------------------

**■ 공통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들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번조 등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관청,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시 공급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 본 아파트는 351세대 (4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대별 공급금액은 면적,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 되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해당 지자체에 인근 개발계획 문의 또는 사업부지 현장 외부에서 현장여건, 주변 혐오·유해시설 유무,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 소음, 조망권, 일조, 진입로, 주변건물 높이, 일조 및 시야간섭 등 주변환경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제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정책, 부산시청 그리고 해당 사업관계자의 계획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민원 제기 및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견본주택 내 모형 및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당사자인 분양사업자 및 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부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외국인(법인·단체 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다음과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 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같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
  -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합니다.
  -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한국부동산원에서 동·호수를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 하기로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및 단지 공사현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명칭, 단지 내 시설 및 공간의 명칭 및 동 번호 등은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매립폐기물 및 암반발견, 노동조합의 파업·대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정부의 정책,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고,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지역 내 및 그 외 타지역의 타사 또는 분양사업자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세대별 등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 85㎡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시행위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공사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공사 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해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에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에 따라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단, 각 용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시설별 연면적 기준으로 면적배분되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수인·동의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거나 관련법 위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 및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 민원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사업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사업추진여건 변화, 관계기관 및 승인기관 협의과정,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사전환경성 검토,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 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계약자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 분양 목적물 및 인접단지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분양목적물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사양 및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목적물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 주변의 도로, 철도 등의 교통계획은 관계기관의 정책,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계획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 변경,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 인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시설 및 구조물(송전탑, 전신주, 가로수, 한전패드, 가스정압기, 지하차도, 보도육교, 공동구환기구, 변압기, 쓰레기처리장, 버스정류장 등)계획 및 현황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소음 및 미관, 악취, 진동, 백연, 인근도로 통과차량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요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단지 인근에 다양한 개발사업 및 도로개선공사 등이 진행 중이므로 개발에 의한 주변 건물과의 이격거리, 채광, 일조, 조망, 소음, 프라이버시 간섭 등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모형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은 시공사 브랜드 기준의 변경, 디자인 개선 등으로 형태, 문양, 줄눈, 색상 등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구조적으로 아파트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 주민공동시설(골프연습장 및 사우나 등) 및 실외기, 보일러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진동, 백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해당시설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건립으로 유입되는 초등학교는 해운대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며, 입주시기, 사업추진현황 변동(취소, 해제 등), 세대수 변경,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정책 추진에 따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의 결정에 따라 학생배정계획 등이 분양 당시와 다르게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계약자(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업계획승인도서 이외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입주자)가 직접 비용을 부



- 담하여 법적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상 호실 및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및 조경 시설물), 입면 및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착공 후 현장여건 반영, 구조, 성능, 품질개선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분양 시 각종 인쇄물 및 컴퓨터그래픽(CG), 인터넷, 모형 등에 표현된 분양목적물의 평면, 치수, 면적, 건축물 마감 및 디자인, 사인, 도로, 조경 및 시설물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중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에 대한 수인 및 제반관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직·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수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간의 결정을 수용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변경 시 입주자(계약자 등 포함)는 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조경(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 관리 등), 경관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단지 내·외부 조명 및 공용부 조명, 단지 내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전기, 수도, 가스 등 포함)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및 디자인 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입주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타 용도와 통합으로 사용하는 시설(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전기, 기계 관련시설 및 사용자 등)의 유지, 보수는 타 용도와 공동으로 해야하며 입주자(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는 시공상의 하자부문에 한하여 하자보증 기간 내에서 보수의 책임을 지며,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여 분양하는 타 상품과의 상품, 외관, 마감사양, 엘리베이터 개소 및 커뮤니티 종류, 면적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하자판정 및 보수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 이후 입주자(입점자)의 사용 및 유지·관리상 미흡에 따른 자재 또는 시설, 제품 등의 성능저하 발생 시 '계약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으로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 추후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 관리비(전기, 수도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관리 상 필요 시 타용도의 입주자(입점자) 및 이용자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인·동의합니다.
- 천연석, 시트, 타일의 경우 흠집, 결, 무늬, 이색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자재가 가진 특성상의 문제일뿐 하자의 범위는 아님을 인지·수인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치계획 상 동별 주차구획 배분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동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주동 출입동선이 상대적으로 멀어 불편할 수 있으니 주동 출입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인지·수인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공용 파이프 샤프트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됨을 수인·인지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우수조, 저수조, 태양광패널, 세대 내 루버형 집광채광 시스템 등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전기, 수도, 가스 등 포함)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고, 마감자재는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의 경비실 및 시설별 주차 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수량 변경, 위치 이동 등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 차량 출입구(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외부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승하차대기공간,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실외기, 가스정압기, 도로 등과 인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저층부 세대 포함)는 소음(경보음, 상가이용자 및 기타 보행자에 의한 소음 포함),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미관저하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 수목투사등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 및 채광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인허가, 생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기울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욕실 슬리퍼 높이 차에 따른 걸림현상과 무관합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에 인접한 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주거동 내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 계단실 등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물건 적치 등)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별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지하 1층에 각각 설치, 대형폐기물보관소는 지상 1층 공용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폐기물보관소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골조상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식재 등의 세부 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 수량,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동옥탑부, 벽면 등에 설치 예정인 건설사 브랜드 관련 심벌, 단지명, 동 번호 등 부차물의 설치위치, 수량, 디자인 등은 본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하자처리를 목적으로 지하주차장, 동 PIT 일부 공간에 관련 공사자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해운대 관광특구 내 위치한 단지입지 특성상 외부인으로 인한 교통혼잡,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바다에 인접하여 강풍, 해무, 모래바람 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아파트) 남측 입면 외벽에 설치되는 커튼월룩으로 인한 태양반사광 등으로 특정시간대 인접한 세대 및 다른 주거지에 피해가 유발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입주인 및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이 피해자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3층 101동 우측에 단지 내 어린이 옥외놀이공간 및 지붕구조물이 시공되어 인접한 세대에 미관저하, 시야간섭,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 광고

- 견본주택에는 74㎡타입, 84㎡타입의 샘플하우스가 설치되고, 그 외 미설치된 59㎡A타입, 59㎡B타입은 분양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사업계획승인도서 확인 및 분양상담 등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가 공식적으로 제작 및 배포한 광고홍보물(분양 홈페이지 내 이미지, 동영상, 리플렛, 공급안내서 등) 이외의 홍보자료와 주변의 구두 과대선전 등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일부 분양상담직원, 부동산중개인(법인), 기타 개인이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작하여 개인 매체(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게시, 배포, 전파한 사항에 대해 시행위탁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식 광고홍보물 여부는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에게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안내 등 인쇄물과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컴퓨터그래픽(조강도, 투시도,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광고·홍보물이므로 본 단지 및 주변환경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홈페이지의 VR영상은 샘플하우스를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사용 상품이 포함된 영상이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분양 시 제시된 컴퓨터그래픽(CG, 영상물 등), 세대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컴퓨터그래픽(CG), 모형 등에 표현된 외벽 디자인 및 입면의 줄눈형태, 입면 마감재의 입면 돌출, 표현, 재료, 색채 등은 실제 시공 시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가구소품,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공급대상이 아니며,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견본주택에 설치 된 모형은 대지 주변현황, 각 부위별 치수, 스케일, 마감재, 색상, 조경, 식재, 단지 및 도로의 고저차 등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위세대의 샘플하우스는 필요한 설비 기기, 각 실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 세대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디퓨저, 점검구의 개수 및 위치 등은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고 각 타입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 제품사양, 형태 등은 변경(자재품 단종,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또는 동 가격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포함)될 수 있으며, 각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기계장치, 천장환기구(디퓨저), 수전,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 배수배관의 제품사양과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 시 설계기준,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견본주택 천장, 벽 등에 설치된 DP용 조명은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인 바,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은 연출된 사항으로 실제로 시공 설치되지 않는 사항이며,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확인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연출용 제시부분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건식벽체,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 상의 이유로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 외벽 등은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제작된 참고용 제품으로 실제 본 공사 시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프레임, 손잡이, 유리 등 구성요소의 형태, 재질, 색채, 사양, 열림(개폐)방향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의 수량, 용량, 위치, 타입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의 TV 설치 방식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전원, 통신, TV용 케이블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의 취향 및 식탁 가구배치 형태 등을 사유로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하향식피난공간 창호, 하향식 피난구, 완강기 등의 위치 및 크기는 본 공사 시 관련법에 맞추어 설치되며, 하향식피난구 및 사다리 는 위·아래층과 교차되어 시공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 전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 및 공급예정이며 그에 따라 주택전시관,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견본세대 CG상 전 평형 발코니 확장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류(시스템가구 포함)의 바디 및 도어 마감재 (도장, PET, LPM, 유리 등)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통신분전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디지털도어락, 소방설비류 등은 기능 및 디자인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월패드,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류는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 ■ 일반사항

- 본 건축물은 아파트 2개동, 오피스텔 1개동으로 구성되며 단지레벨, 주변 환경 등에 따라 각 동의 진입부 위치 및 형태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일이후 분양계약자의 50% 이상이 소유권이전 등기 및 입주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주는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을 구성하여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사업주체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전에 건축물을 관리할 목적으로 사업주체는 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관련 용역계약에 의거 부과되는 관리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전체 용도(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가 통합 사용하는 부분(지하5층 우수조펌프실, 지하4층 우수조 점검층, 지하1~2층 주차램프/일부 주차통로/ 아파트 방풍실 전면공간, 지하1층 주차램프 주변 일부 주차장, 지상1층 경비실/용역원실/숙직실/관리사무소 공용복도/소화가스실 등)은 전체 공용면적으로 각 건물 용도(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아파트 및 오피스텔 용도가 통합 사용하는 부분(지상2층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제외))은 아파트, 오피스텔 공용면적으로 각 건물 용도별(아파트, 오피스텔)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주민공동시설' 문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경사로 및 일부주차통로 등(지하1층~지하2층)은 전체 용도(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가 공동으로 사용해야하며, 해당면적은 각 건물 용도(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가 통합 사용하는 지하1층 비주거용 발전기실/전기실/소화가스실 및 전실/펌프실, 지상1층 비주거용 MDF실/통합방재실 등 은 비주거 전체 공용면적으로 아파트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하1층~지하2층 주차장은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며, 각 건물 용도(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지하3층~지하6층 주차장은 아파트 전용 주차장으로 아파트 입주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입주(점)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일부 공간 및 주차장 구간은 타용도 혹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타용도의 입주(점)자의 사용 및 유리/관리 등을 위한 행위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1층 주차장은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를 위한 전용 주차공간이지만 아파트 입주인을 위한 서비스차량(이삿짐차량, 쓰레기수거차량 및 택배배송차량 등)의 통행 및 정차 필요 시 공동으로 사용해야하며, 서비스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 통행불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수인·동의 합니다.

### ■ 사업지 및 도로 (단지 및 주변현황)

- 사업부지 북동측의 폭 12m도로(중동1로)는 해운대구청이 주관하여 테마거리조성사업(해운대온천길)이 진행 중이며, 북서측의 폭 4m 도로(구남로11번길)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 폭 10M 계획도로로 확장될 예정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로 진입하는 보행자 동선이 북동측에 인접한 12m도로(중동1로)에서 1개소, 북서측에 인접한 10m도로(구남로11번길)에서 2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 차량 주출입구의 높이는 약 3.6m, 폭은 약 7m, 지하주차장 내 차량의 폭은 약 6~7m로 구성되어 있고, 차량의 높이는 2.3m이상 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 단지 주변 전기시설물(한전패드 등), 가로등, 가로수, 자전거보관소,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옥외소화전 등의 위치를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본 시공 시 토지의 지형지물 및 대지, 인접도로의 경사도에 의해 발생하는 실내·외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단차극복을 위한 계단, 경사로 등의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동측(중동1로 도로변), 북서측(구남로11번길 도로변)에 계획된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입주자가 임의로 전용화하거나 헨스 등의 시설물 설치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내 조경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입점자) 공동 부담입니다.
- 단지 주변의 도로공사 또는 행정적 원인으로 인하여 공개공지, 도로의 경사도, 대지의 레벨, 조경, 옹벽, 담장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되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거 도로정용이 되며, 정용료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와 오피스텔 입주자 및 근린생활시설 입점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단지 북서측으로 연결되어 오피스텔 103동 좌측으로 출차되는 계획의 비상차량도로는 비상 시 소방차 등의 진출입 혹은 서비스 차량동선을 위해 계획된 도로로 평상 시에 일반차량의 진출입 도로로 활용하지 않음을 확인·수인 합니다.
- 단지 남측에 인접한 단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548-38번지 일원)는 총 4개동, 최고 45층 공사진행중이며, 이로 인한 채광, 일조, 조망, 환경권 제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주변현황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수인·동의 합니다.
- 인허가 조건에 따라 단지 남측에 인접한 단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548-38번지 일원)와 연결보행로 1개소가 상호연계되어 계획되어있으며, 양 단지의 입주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기능으로 활용되어야함을 수인·동의 합니다.

### ■ 인허가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주거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로비, 엘리베이터홀, 복도,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공간은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성능개선에 따라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므로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 시설에 대해 관련 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 설계변경, 대지지분 변경 등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등)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바람세기가 다를 수 있으며, 연돌효과로 인해 엘리베이터 문닫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채광을 위한 탐라이트 및 옥탑 지붕마감 등으로 인해 계절, 시간에 따라 일부 세대에 햇빛 반사로 의한 눈부심 및 실내온도상승,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조경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아파트 및 오피스텔 외벽 및 옥탑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 장애등,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용 중계기 및 안테나, 피뢰침, 태양광설비,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 하수, 우수, 도시가스, 전기 등)계획은 인·허가과정,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창호(발코니 내부창호 포함)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천연 및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단지 조경(식재, 조경시설, 옥상녹화, 옥상조경구조물, 자전거보관소 등)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내부도로, 조경 선형의 변경,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으로 적용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의거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은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본 단지는 범죄예방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내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와 일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D.A, 환풍, 탐라이트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이며 소음, 냄새, 진동, 빛반사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풍의 환기용 D.A 및 제연환풍의 급배기용 D.A는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비상차량동선 및 접근로 확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는 시공 및 소방 준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택배 등)의 통행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 정차공간이 설치되는 부위에는 식재 및 차폐 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구 경사로에 경고등이 설치되어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발생과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삿짐은 당 건물의 특성상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지하1층 및 지상1층 각 주동 코어 내 승강기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하1층 주차장 차량 높이 제한은 3.6m로 대형 이삿짐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높이는 차량 통로의 높이 기준이며 주차 구간의 일부는 설비 및 구조를 위해 유효높이 2.1m 이상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창호에 접합유리난간으로 설치되어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여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사를 하여야하며, 과도한 충격 시 접합유리난간이 파손되거나 프레임이 훼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공 이후 훼손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우편물수취함 등은 지상 1층, 무인택배보관함은 지하 1층, 각 시설별 생활폐기물보관소는 지하 1층에 계획되어있으며, 지하주차장은 대형차량(1.5톤 초과차량)의 통행이 불가함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건축 공사의 특성 상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주요 구조부 및 각 세대 내에 자재 반입 등을 위한 임시 개구부를 공사 기간 중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공지반 녹지 하부에는 우수침투수에 대한 원활한 배수와 수목의 뿌리 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근기능으로 자갈 배수층으로 시공할 예정이며, 이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배수/방근 자재 등에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 3층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입주자만 사용가능하며, 비상 시 101동에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전용 계단실을 통해 아파트 입주자들이 하부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 주거동 계획

- 각동의 엘리베이터는 동의 조합형태 및 층수에 따라 2대 혹은 3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동, 호수라인별로 다를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각 동 공용부의 채광, 환기창호는 주거동의 조합 형태에 따라 각 동별로 위치, 크기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아파트 각동은 코어당 2호, 3호, 4호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각 세대들을 연결하며, 아파트 각 세대의 위치에 따라 출입구와 코어와의 거리는 차이가 있음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 및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일반, 음식물쓰레기보관소 및 생활폐기물보관소 등이 지하1층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냄새 및 소음, 분진, 미관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설치위치 및 규모, 개소, 형태는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동선, 거리 등은 차이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지상 3층 외부 공간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소음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조경 및 시설물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및 지상1~3층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별 출입로 및 공용 홀은 동별로 구조적 조건이 상이하어 출입로이나 홀의 크기, 구조,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공용복도, 엘리베이터 전실, 계단실 등은 아파트 공용공간으로 폐박스, 쓰레기봉투, 자전거, 유모차 등 기타 각종 개인물품의 적치가 불가합니다.
- 지하1층 무인택배보관함, 지상1층 우편물보관함 등은 보행동선,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위치 및 개소, 디자인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상 3층 외부공간,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지상 21층 피난안전구역, 옥탑에 인접한 세대(101동 및 102동 4층, 20층, 22층, 43층)는 소음/조명 및 프라이버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공간에 설치된 제연환풍, 소화 펌프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의 기계장비 설치로 운영 및 유지관리 시 소음, 진동이 세대로 일부 전달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각 동의 옥상에는 관례법령에 따라 비상 시 구조활동을 위한 인명 구조공간이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구조활동을 위한 헬리콥터의 접근 시 소음, 진동, 바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아파트 및 오피스텔 지상3층은 필로티 또는 PIT공간으로 계획되었으며, 오피스텔 103동 지상3층은 고층부에서 이어지는 입면디자인의 연속성을 위해 일부구간 창호를 설치하였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3층 외부공간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입주자만 사용가능하며, 아파트 101동 우측의 근린생활시설용 계단실(지하2층~지상2층 연결)은 지상3층까지 이어지나 지상3층에서는 비상 시 아파트 입주자가 피난계단을 통해 하부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용도로 되어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지상1층 101동 출입구 전면 보행로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여 소음 및 혼잡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2층 상부에 건축구조를 위한 전이슬래브 및 PIT공간이 계획되어있으며, PIT공간 내 각종 배관, 실외기, 배기팬 등이 설치되어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저층부(1~3층)의 공용부분에 비주거 건물을 위한 서비스(전력, 통신 등)의 일부가 통과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물의 각층 층고가 상이하어 같은 층수라도 실제 높이가 용도별로 상이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층 높이 : 아파트 H=2,950 / 오피스텔 H=3,100)

## ■ 외관 계획

- 건축 및 구조물 외관에 브랜드용 건물명칭, 광고, 조명 및 상가간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축벽, 건물 및 각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분할, 색채, 마감재), 난간의 형태 및 높이, 경비실, 차량출입구, 주민공동시설 등의 외관디자인 및 재료 등은 입주자의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축벽디자인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내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 및 각동 출입구, 각종 시설물, 조명, 사인계획 등의 디자인 및 마감재, 색상 등은 특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중 아파트 브랜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입면패턴, 색상, 로고 등의 디자인 및 위치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 시 입주자의 별도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내 지상1층과 지상3층 옥외공간에 설치될 예정인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위치 및 디자인 등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마감재는 페인트, 석재 등이고, 고층부 마감재는 페인트, 금속재(지붕층 이상에 한함), 커튼월록 등으로 되어 있어 위치 및 층수에 따라 마감재가 다름으로 인한 외관 및 빛반사, 현취, 소음 등의 간섭이 다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붕 등 옥외 난간은 건축법 등 높이기준에 따라 콘크리트난간 혹은 금속재 난간 등으로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입면에는 건물형태 및 돌출 구조물로 인한 선홍통, 가스배관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세대 내부로 우수배관, 가스배관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 동별 외벽에 환기 장치 및 세대 화장실, 주방 직배기 관련 외부마감캡 설치가 되며 위치 및 크기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아파트) 남측 입면 외벽에 설치되는 커튼월록으로 인하여 타 세대들과 외부창호, 외관의 재료 및 색상, 디자인, 형태가 다름을 수인·동의합니다.

## ■ 주차장 계획

- 아파트의 주차는 지상(외부)주차가 없으며, 지하3층에서 지하6층까지 총 407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는 전체 지하 자주식 주차장으로 407대로 계획하였고 아파트 전용 주차영역은 지하3층~6층(주차대수 407대),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주차대수 29대), 오피스텔 주차영역은 지하1층~2층(주차대수 143대)에 별도로 계획하였으므로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제한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설물 사용자 및 입점자는 타용도의 주차장 사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차량 주출입구의 높이는 약 3.6m, 폭은 약 7m, 지하주차장 내 차로의 폭은 약 6~7m로 구성되어 있고, 차로의 높이는 2.3m이상 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인, 오피스텔 입주인, 근린생활시설 입점자 및 이용자는 해당 시설 각각의 주차구역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상·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고,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각종 기계설비 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은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에 노출되어 설치되며, 시설별 구분없이 공동으로 사용함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법적개소 이상 계획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 수량과 동·층별 배분계획, 위치변경에 따른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설비 또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될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은 사용승인 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해당 전장고를 초과하는 높이의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설계여건에 따라 주차장 내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일부 주차면은 기동과 간섭으로 운전석 승하차 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 외벽과 주차구획의 이격으로 인해 일부 주차통로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 여러명의 운전자가 차량을 공유하는 방식의 카셰어링 전용 주차공간이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 내 1개소 설치될 예정입니다.
- 지하1층 주차장 내 여러명의 운전자가 차량을 공유하는 방식의 카셰어링 전용 주차공간이 1개소 설치되며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입주(점)자가 공용으로 사용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건축물 구조여건상 지하1층~지하2층 주차장 경사로 및 일부 주차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공유면적으로 연면적을 고려하여 각 시설별 배분되었으며, 지상1층 차량출입차단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등도 각 시설이 공유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상1층 외부공간에 대형폐기물 보관소가 계획되어 관할구청에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체의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 및 정차로 인한 소음, 냄새, 주차장 사용,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주차장에 각 시설별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계획되어 대형폐기물처리차량은 지하층 진입이 불가하며, 지하층 층고를 고려하여 관할구청에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체의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냄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주차장은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를 위한 전용 주차공간이지만 아파트 입주인을 위한 서비스차량(이삿짐차량, 쓰레기수거 차량 및 택배배송차량 등)의 통행 및 정차 필요 시 공동으로 사용해야하며, 서비스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 통행불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수인·동의 합니다.

## ■ 주민공동시설

- 본 건축물 내 주민공동시설은 ① 아파트 소유자들과 오피스텔 구분소유자가 공동소유(공유)하는 시설(‘공유형 주민공동시설’) ② 아파트 소유자들만 단독 소유(아파트 소유자들간 공유)하는 시설(이하 ‘아파트 전용 주민공동시설’)로 구성되며, 각 시설의 설치 및 사용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구분	① 공유형 주민공동시설	② 아파트 전용 주민공동시설
시설명	지상2층 : 로비 / 피트니스 1 / 골프연습장 1 / 사우나 / 카페라운지 / 독서실 / 취미실 / 주민회의실 등	지상1층 : 어린이집 지상2층 : 경로당
지분구조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각 시설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른 배분	아파트 100%
사용방식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입주인 공동사용	아파트 입주인 사용

-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민법 제26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유형 주민공동시설’의 전부를 각 용도별 전용면적 비율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인은 오피스텔의 입주인이 ‘공유형 주민공동시설’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인은 오피스텔 입주인의 ‘공유형 주민공동시설’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오피스텔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이를 위한 ‘공유형 주민공동시설’ 관리규약의 개정(변경) 행위, 기타 오피스텔 소유자 및 입주인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전용 주민공동시설’은 원천적으로 아파트 입주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계약자(수분양자)는 해당 시설의 사용하지 못함을 사유로 사업주체에게 민원(플렌카드 게시 등)을 제기하거나 공급계약의 변경, 해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행정기관, 언론사 등)에 민원제기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관리단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모두 구성된 경우, 향후 ‘공유형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및 운영(내부 집기 및 비품 구입 포함) 및 관련 비용의 부담, 관계 규정의 제, 개정 등 모든 사항은 오피스텔 관리단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 및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합의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전부는 어떠한 법적·사실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상호 ‘공유형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및 운영(내부 집기 및 비품 구입 포함), 관련 비용의 부담, 관계 규정의 제, 개정 등에 관한 사항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합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유형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및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오피스텔 및 아파트 수분양자 및 입주인은 ‘공유형 주민공동시설’의 미운영, 운영중단 등을 사유로 사업주체에게 민원(플렌카드 게시 등)을 제기하거나 공급계약의 변경, 해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행정기관, 언론사 등)에 민원제기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내부에는 주민공동시설 및 기타 주민을 위한 시설(휴게공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인한 소음, 진동 및 시각적 간섭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동호수 인근 시설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사우나, 골프연습장, 독서실, 카페라운지, 주민회의실, 취미실 등)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시공 시 현장여건 및 행정상 등의 이유로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형태, 내부구조, 면적, 건축계획과 마감재 등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1층에는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위치와 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와 각종 설비팬 설치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에 설치된 시설물(공공부 경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야간에 시설물과 인접한 세대는 가로등, 외부사인조명 및 경관조명에 의한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대관 인허가 과정 또는 실시공시 사용자 동선/기능/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로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본 단지 내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하며, 제공 가구 및 마감재 등은 실시공시 자재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등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비품, 집기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 혹은 시공사에서는 입주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이전까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가 제공한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되오니, 계약 전 운영방식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주민공동시설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도록 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 등의 사양은 각 시설의 기능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인들은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의 사양 등에 대한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프로그램, 시설, 용도, 마감 등은 다른 단지와 비교 등을 이유로 추가설치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입주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1동 하부 지상 2층에 골프연습장이 계획되어 인접한 세대에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전용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수 없음을 인지하고 수인·동의합니다.
- 경로당, 어린이집, 사우나실 등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가 계획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진동, 연기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본 단지 내 공유형 주민공동시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지분공유로 배분되어있음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입점자 및 이용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과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1층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계획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자는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계획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하1층에 29대가 설치되고, “오피스텔 주차장”은 지하1층~지하2층에 143대가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입점자, 근린생활시설 이용자, 쓰레기수거차량, 카셰어링 전용주차공간 등) 및 “오피스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출입구 및 단지 내 지상1층 도로, 지하주차장 내 주요차로, 차량출입차단기 등을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입주(점)자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 등의 관리행사는 일체 할 수 없고 별도의 대지구획은 불가함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인접한 대지레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각 호실의 전·후면부, 좌우에 일부 단차에 의한 경사로 및 계단이 설치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 가로에는 인허가 및 공개공지 확보 등 관계법령 및 도로개선사업에 의해 가로수, 가로등, 조경식재, 송수구, 버스정류장, 옥외소화전, 안내사인물, 벤치, 로고프로젝터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종(식당, 관람집회시설 등)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2층 상부 PIT 내 부속시설(실외기 등) 설치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일반, 음식물쓰레기보관소 및 재활용분리수거장 등은 지하1층 주차장 내 설치될 예정으로 지하주차장 공간에 직간접적인 소음, 냄새, 진동, 미관저하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설치위치 및 규모, 개소, 형태는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근린생활시설의 주방 배기팬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수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복합적으로 계획된 단지로 공유공간(천장 등)으로 다른 용도의 가스배관 및 기계/소방,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을 위한 경로로 공동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지상 1층에 계획된 각 호실 내 전용공간 상부(천장 등)로 가스배관 및 기계/소방 등을 위한 배관이 관통되어 설치됨을 수인·동의합니다.
- 지상 2층에 계획된 공용 복도 공간(천장 등)으로 가스배관 및 기계/소방 등을 위한 배관이 설치됨을 수인·동의합니다.
- 101동(아파트)과 인접한 위치에 계획된 근린생활시설용 계단실은 지하2층~지상3층까지 연결되나 지하2층~지상2층은 근린생활시설 용도, 지상3층은 아파트 용도로서 근린생활시설 입점자 및 이용자는 출입이 불가하며, 비상 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해당 피난용 계단실(지상3층)을 이용하여 하부층으로 피난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연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외부 벽면에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에 공용 옥내소화전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호실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일부 호실 기동 마감내부에는 우수배관이 매립되어 시공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일부 호실(205, 206, 207, 208호) 상부에는 실외기 및 탈취기 설치될 예정이오니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따라 내외부 창호, 점포별 구성, 형태, 기동의 유무 및 크기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냉·난방방식은 개별 냉난방으로 입주(점)자 공사분이며, 실외기의 위치는 관리자 및 인근점포 입주(점)자와 협의하여 설치해야 하고, 실외기를 설치하기 위한 설비배관은 입주(점)자 공사분임을 수인·동의합니다.
- 인허가 과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1층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계획되어 있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공중화장실의 관리는 근린생활시설 입주자가 공동으로 해야합니다.

## □ 단위세대

### ■ 일반사항

- 고층 세대의 경우 측면 및 상부에 설치되는 장식 구조물과 경관조명, 외벽 사인물 등으로 시야간섭이나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구조를 설치로 인한 기동이 옥외공간 내 추가 설치되거나 옥상 구조물의 형태, 재질,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옥상구조물 상부면은 도장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위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74㎡타입 및 84㎡타입 내 거실 창호부위에 신재생에너지인 집광채광루버가 설치되어 해당 부위의 커튼박스 너비가 다른 타입보다 더 넓게 설치될 수 있으며, 천장형에어컨 위치 및 우물천장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해당 설비 설치에 따른 커튼 및 블라인드 설치가 다른 타입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74㎡타입 및 84㎡타입 내 거실 창호부위에 신재생에너지인 집광채광루버의 설치에 따라 생활상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비상 시 구조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호(거실 내 시스템창호로 설치)는 창호의 크기, 두께, 사양, 창호프레임,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조활동 시 인지를 위한 사인물이 유리에 부착될 수 있습니다.

### ■ 평면 계획

- 본 아파트는 세대 평면구조상 동일한 타입이라도 계약 세대가 속한 동·층·항별 차이, 주변 개발행위 등의 변화, 계절 등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 간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택전시간에 설치된 외부 조망 예시이미지는 연출용으로 실제의 조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아파트 최하층(지상 4층, 5층) 및 최상층 세대에는 방음을 위하여 창호마다 내부에 동체감지기가 설치되며, 배터리 교환 주기는 통상 1년으로 사용 요건에 따라 교환 주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해당세대 입주자가 해야합니다.
- 동하부 필로티 인근 저층세대는 필로티 내 휴게시설물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 등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필로티 상부층 세대의 바닥 난방 효율이 기존층 세대 대비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도어 카메라 설치로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견본주택과 달리 동호수에 따라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추후 별도설치를 위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콘센트 유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설치가능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제품 설치 불가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본 아파트의 타입, 호수별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확인·수인 합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욕실, 다용도실 등의 단차부위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복도 또는 침실(거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으나 이는 하자 와 무관함을 확인·수인 합니다.
- 각 세대 내 침실1 발코니에 하향식피난공간 및 하향식피난구(필로티 상부세대 제외)가 설치되며, 비상 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상 하향식피난공간 출입문은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또한,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피난구의 개폐방향은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공간에는 어떠한 물품도 적재 및 보관할 수 없고, 비상 시 아래층 전유공간 이용 및 관련법에 따라 문 등에 잠금장치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물질적, 금전적인 책임 등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정경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을 고려한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부 벽체는 일부 경량벽체로 시공될 수 있으며,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마감자재(수전이나 액세서리류 포함)의 설치 위치 및 에어컨 실내기, 전열교환기, 환기구, 욕실팬, 온수분배기, 각종 배수구의 위치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 및 크기, 디자인 등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과 관련하여 외부 벽체가 내부에서 외부로 조망하는 시야를 일부 가릴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배관, 세대 내 루버형 잠광채광 시스템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우수 선홍통이 설치되며 수량,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슴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의 생활환경 및 주기적인 실내환기가 부족할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실외기 창호의 손잡이 모양 및 개폐작동 방식, 그릴 및 환기구 형태, 색상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다용도실 천장 내부에 설치되며 유지보수를 위해 정경구가 함께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 실 천장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통하여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10층 이하 세대에는 관련법에 따라 완강기가 병행하여 설치되며, 피난창 외부에는 완강기용 고리와 내부에는 발판용 완강기가 설치되어 미관 및 공간사용상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 설치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공간에 설치되는 보일러 및 하부배관의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외기실 루버가 오픈되지 않도록 입주자가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실외기실에 설치됩니다.
- 본 공사 시 침실 등 도어에는 손끼임방지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의 자재특성상(은 성분)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세대 내 콘센트, 스위치, 조명, 월패드 등의 설치위치 및 수량, 규격 등은 시공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미건립 세대의 경우 견본주택에 적용된 품목(가구, 가전,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등)과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시간, 장소별 조도 및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주방가구 및 욕조 하부, 샤워실, 비확장 발코니 등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냉방은 세대별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되며 설치위치, 수량 및 용량 등은 타입, 호수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수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층 세대 및 피난안전구역 하부 층의 발코니(발코니, 다용도실,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공간 등) 천장고는 단열재 설치로 견본주택 대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침실1(안방) 발코니에 전동 빨래 건조대(리모컨 타입, 조명 일체형)가 설치 되며, 별도의 발코니 조명은 설치 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타입별로 발코니, 다용도실 및 실외기실의 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일부 단위세대의 창은 소방관 진입창이 계획되었으나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 창호 및 난간

- 내·외부 창호 디자인, 난간, 프레임 개수 및 사이즈,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크기, 개폐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층부 석재 및 커튼월록 등 외부특화 마



감구간 창호크기는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주방을 제외한 미서기창에는 일체형 유리난간이 설치되어 환기량이 일반적인 창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부 창호(샷시)의 손잡이는 추후 본 시공 시 사용성 및 미관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가구 및 마감재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등에 따른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수인·동의합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알루미늄슬라이딩 도어는 제품 특성상 중문 문짝과 벽체 사이의 틈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방음, 기밀성능이 없는 제품입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알루미늄슬라이딩 도어는 본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일반,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수인·동의합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석재, 바닥재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크기,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하자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단위세대 내부 주방가구, 욕실가구, 현관 수납장, 침실 불박이장 등의 뒷면 및 상하부에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건축 마감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를 수인·동의합니다.
-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판, 욕실 뒷선반, 주방 상판 및 벽체, 거실 아트월, 발코니 등에 사용된 인조석재 및 타일, 락판넬 등은 자재의 특성상 패턴, 색상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나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설치된 아일랜드장은 위치를 옮길 경우 전기 배관 및 전선이 바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가구류(시스템 가구 등)에 설치되는 인테리어 조명은 일괄 소등 스위치로 소등이 불가합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 및 방향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마감자재, 가구 등의 색상, 마감재 등이 자재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라도 조명, 자연광 등의 차이로 인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 본 주택은 2024년 06월 준공예정인 아파트로 확장형 발코니(안방, 다용도실 등 제외) 및 천장형 에어컨은 기시공되어 무상제공합니다.
- 기시공된 확장형 발코니 및 시스템 에어컨에 대하여 변경 등 일체의 추가공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시공 중으로 “발코니 비확장형”을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비용은 아파트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아파트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공급안내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시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 별도의 행위허가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자가 입주 후에 시공사와 무관하게 실내인테리어업체를 통하여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의 설계 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 있습니다.(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소음, 진동,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용양,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색상, 열림(개폐)방향 등이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사 동등 품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저하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실사용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평면은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풍통, 선풍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및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수전 및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 기계·전기·소방 설비 (공용설비 및 시스템)

- 아파트 난방은 각 세대 내 개별보일러를 이용한 바닥방 방식입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다용도실 세탁공간 천장 내 기계식 환기 장치가 설치되며, 이를 위한 천장 점검구 및 환기구가 설치되어 기계식 환기 장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실외기, 보일러, 환기장치 등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방송 시설물로 인해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욕실 천장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세대 내 온수분배기는 싱크장 하부, 급수급탕분배기는 하부 세대 욕실천정에 설치되고 통신단자함, 세대분전함은 신발장, 침실, 복도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지하층에 다음과 같은 공용설비시설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지하5층: 우수조, 펌프실 / 지하4층: 우수조 점검공간 / 지하2층~3층: 주거용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소화가스실 / 지하1층: 비주거용(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소화가스실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패드가 설치되고,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영구배수 설비운영에 따른 유지 관리비용은 주거시설 입주자와 비주거시설 입주자(입점자)가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 다용도실(실외기실 포함)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아파트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며, 설치용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반사에 의한 눈부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아파트 단위세대 내 가스배관은 인입되어 있으나, 가스레인지 관련 설비가 설치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추가 설치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2 제4항에 의거 지하1층 헬룸, 지상21층 101동, 102동, 103동 EPS/TPS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시공과정에서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펌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위해 각 동에 피뢰 설비용 수뢰부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수뢰부가 보일 수 있습니다.
- 건물 측면에 항공장애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항공장애등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입주자(입점자)가 임의로 냉·난방 공급설비의 용량 증설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에어컨은 무선리모콘 작동 방식으로 별도의 벽부형 스위치가 설치되지 않습니다.(실내기 1대당 1개)
- 아파트 전열교환기의 스위치는 주방 전등 스위치 옆에 유선스위치 형태로 설치 됩니다.
- 각 세대 주방, 욕실의 환기설비는 직배기 방식으로 작·간접적인 소음, 냄새 등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외벽에 배기구가 설치되어 입면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배관에 대한 상세설계는 현장여건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한 설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한 세대 내 무선 AP가 설치되며, 인터넷 회선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 주방후드 상부장에는 자동식소화기 장치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주방후드 주변 천장에 점검구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하향식 피난공간 내 비상조명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 내 실외기설치공간 또는 발코니에 보일러와 수전 및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원 가입 및 동의를 필요합니다.
-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 제공이 원칙이나 당 사의 정책에 의해 일부 유상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난방,환기,가스밸브록업열원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카카오희App에 연계되는 가전사(삼성전자 등)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연계되는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홈 서비스는 연동되는 홈넷 및 3rd Party 들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기기별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스마트 홈 서비스는 카카오프 음성인식 내장형 월패드를 통해 음성 인식 제어 및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 홈 서비스에 연계된 카카오프 서비스 이용 조건은 카카오프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프 앱을 통해 IoT 가전 연동기능을 사용할 경우, 카카오프의 정책 및 가전사(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기능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 IoT 가전은 카카오프에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카카오프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 설치 후 이용 가능 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푸르지도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 카카오톡 앱을 통해 연동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은8종 가전(세탁기,건조기,로봇청소기,공기청정기,에어컨,식기세척기,의류관리기,정수기)이며,모델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공 가전 및 기능은 카카오톡 및 삼성전자 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이상 iOS 10.0 이상부터 지원(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6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시, 안드로이드 7.0 누가 이상 iOS 10.3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맥내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소비자 별도 구축). 또한 삼성전자의 SmartThings 앱은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유상 전환 시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스마트 홈 서비스와 연계되는 제휴서비스 업체들은(주거서비스) 시공사와의 계약기간 혹은 해당사의 정책 등에 의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LG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카카오톡 앱과의 연동은 당 사의 개발 일정이나 해당 사의 정책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자 안내

■ 감리회사 및 감리 금액

구분	건축·토목·기계감리	전기	통신·소방감리
회사명	(주)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아키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와이케이엔지니어링
금액	2,052,730,000	535,605,000	616,000,000
사업자번호	229-81-19550	102-81-43172	464-88-01496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관련된 사항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3-101-0001500호	184,092,090,000	2023.03.13. ~ 2024.08.31.(538일)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주택분양보증약관 (보증사고, 보증채무의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회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획(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획을,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획을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 계획을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종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종지통보계획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획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가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엠디엠플러스이고, 한국자산신탁(주)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 중 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아래 ‘관리형토지신탁’에 관한 사항은 본 모집공고의 다른 내용에 우선합니다.
- 본 사업은 위탁자인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 그리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근거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는 ‘한국자산신탁(주)’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위탁자,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급대금을 납부)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 및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입니다. 본 공급계약 대상재산에 대한 시공사의 모든 하자보수책

임(사용승인 전, 후 하자를 불문하고, 오시공, 미시공 등을 포함)은 시공사가 부담합니다.

-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또는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한국자산신탁(주)가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오시공, 미시공을 포함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매수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등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고, 공급 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위탁자 겸 수익자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대금 반환, 입주지연시 지체상금, 매도자의 하자책임, 소유권 이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가 부담하며, 매수인은 사업주체(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주)에 대하여 분양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및 비용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한국자산신탁(주)는 중도금 대출금 앞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우선수익자 지급금 등은 해당 분양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국자산신탁(주)에게는 발행 의무가 없으며, 발행은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발행하기로 합니다.
- 신탁을 정산할 때에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자 :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카이트타워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70012
- 사업방식 : 관리형 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국공유지 및 기부채납토지 제외)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등기

### ■ 사업관계자

구분	매도인 겸 시행수탁사	시공사	시행위탁사
상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법인등록번호	110111-2196304	110111-2137895	110111-2638752

###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홈페이지 : <http://해운대역푸르지오더원.com>

■ 건본주택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

■ 분양문의 : 1522-031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분		적용여부	비고
건축부문 설계기준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열저항합계 기준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기밀 및 결로방지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난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스보일러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고효율변압기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세대 및 공용부위 조명기구 고효율기자재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본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은 2020.04.23.이며, 개정 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개정 2020.1.7. 시행 2020.1.7.)에 의거 500세대 미만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미대상 주택입니다.